

세법연구 10-04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

홍범교 · 김태훈 · 마정화

2010. 8

세 법 연 구 센 터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I. 서 론	7
II. 특정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	9
1. 개관	9
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	9
나. 역외투자펀드 규정	12
2.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	13
가. 적용범위	13
나. 과세소득	15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18
라. 투자정보 파악수단	19
III.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20
1. 미국	20
가. 개관	20
나. 적용대상	22
다. 과세소득	27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34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35
2. 독일	38
가. 개관	38
나. 적용대상	40
다. 과세소득	41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46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47
3. 호주	49
가. 개관	49
나. 적용대상	50
다. 과세소득	54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58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59
4. 뉴질랜드	61
가. 개관	61
나. 적용대상	63
다. 과세소득	66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71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72
IV.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74
1.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과세기법	74
가. 역외투자펀드 적용요건	74
나. 과세소득 계산방법	75
다. 이중과세 조정방법	76
2.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관한 세무행정	77
가. 과세정보 신고	77
나. 조세정보 교류	77
3.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78
가.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필요성	78
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한계	79
참고문헌	82

표 목차

〈표 Ⅲ-1〉 미국의 반이연세제 유형.....	21
〈표 Ⅲ-2〉 미국의 CFC와 PFIC의 적용대상 비교.....	26

그림 목차

[그림 Ⅱ-1] CFC의 과세체계.....	11
-------------------------	----

I. 서론

- 경제의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 간 자본이동은 활발해지면서 국가 간의 포트폴리오 투자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이는 자본주의가 일찍 발전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남.

- 한편, 투자자들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다양한 절세 수단을 개발해 왔으며, 과세당국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을 취해 왔음.
 -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규정임.

-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은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¹⁾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는 조세회피방지제도임.
 - 이는 1962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로 2010년 현재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운영하고 있음²⁾.

- 그러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을 통해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세회피방지 제도를 고안하게 됨.
 -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1) OECD의 비협조적 조세피난처(Unco-operative Tax Havens)로 지정되어 있었던 안도라, 리히텐슈타인, 모나코가 2009년 5월에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리스트에서 삭제되면서 현재 조세피난처로 지정된 국가는 없는 상태임.
(http://www.oecd.org/document/57/0,3343,en_2649_33745_30578809_1_1_1_1,00.html)

2) <http://www.ibfd.org>

Funds; FIF) 규정임.

-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음.
 - 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규정 등을 통하여 부당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있음.
 - 하지만 위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본 규정은 50% 이상의 지배요건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적용할 여지가 없음.
 - 또한 적용대상을 특정외국법인으로 한정하여 법인형태가 아닌 파트너십, 신탁 등의 실체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소개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시사점을 찾는 것임.
 - 국외 포트폴리오투자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는 미국과 독일의 수동외국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제도와 호주와 캐나다의 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s) 제도가 대표적임.

- 이를 위하여 먼저 II장에서 피지배외국회사 규정과 역외투자펀드 규정에 대한 개관적인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를 설명하고, III장에서는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구체적으로 소개한 후, IV장에서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함.
 - 단,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역외투자펀드는 광의로는 국제조세에서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과세제도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제도인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를 의미함.
 - 일반적으로 내국인이 투자한 역외펀드와는 구분되는 개념임.

II. 특정외국회사의 유보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방지제도

1. 개관

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

- 피지배외국회사(이하 'CFC') 규정은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외국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의 이익 잉여금을 투자자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간 유보함으로써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조세회피방지제도임.
 - 이는 1962년 미국이 처음 도입한 이후로 독일(1972년), 캐나다(1976년), 일본(1978년), 프랑스(1980년), 영국(1984년), 뉴질랜드(1988년) 순으로 CFC 규정을 수용함.
 - 우리나라는 1996년에 도입하였고, 2010년 현재 OECD 30개국 중 20개국³⁾이 운영하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가공의 자회사에 많은 소득이 발생하도록 하여 세후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이 있음.
 -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이 높은 자본수출국의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편법적인 영업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대응세제를 필요로 하게 됨.
 - 이렇게 조세피난처에 유보한 소득을 당해 자회사의 모회사인 특정기업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임.

3)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2010년 도입),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터키, 영국, 미국(<http://www.ibfd.org>)

- CFC 제도는 거래적 접근방식(Transactional Approach)과 실체적 접근방식(Entity Approach)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⁴⁾.
- 거래적 접근방법은 피지배외국회사가 수취한 소득의 특성(예를 들어, 수동소득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피지배외국회사가 소재하는 지역은 과세 여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
 - 이 방식은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의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부담이 되는 반면, 공정한 결과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 반면, 실체적 접근방법은 소득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피지배외국회사 자체에 초점을 두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임.
 - 이 방식은 조세피난처 등 일정한 지역에 설립된 외국회사에 대해 CFC 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지역적 접근방식(Jurisdictional Approach)이라고도 함.
 - 이 방식은 적용하기 간편해서 납세협력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적용지역에 따라 CFC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에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함.
 - 이러한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면제소득규정⁵⁾을 두어 제도가 더욱 복잡하게 됨.
- CFC 제도의 과세체계는 적용대상, 과세소득, 이중과세방지(공제규정)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적용대상에는 피지배외국회사(지배요건), 내국인, 저세율국으로 구성됨.
 - 과세소득에는 소득유형(주로 투자소득)과 면제소득이 논의됨.
 - 이중과세방지구정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CFC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과세된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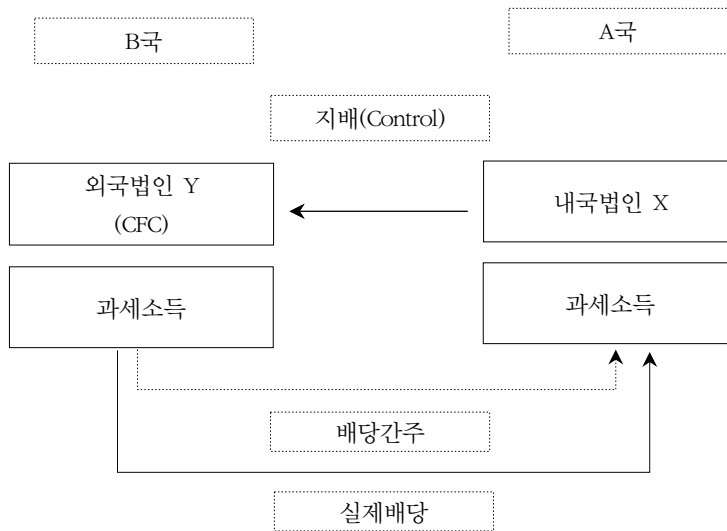
4) Renata Fontana, "The Uncertain Future of CFC Regim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Part 1", *IBFD European Taxation*, June 2006, pp. 260~261

5) 주요 면제소득 규정의 유형은 배당면제, 사업소득면제, 공개거래면제, 동기면제로 구분됨.

1. 배당면제(Distribution Exemption): CFC는 CFC 소득의 상당부분을 투자자의 거주지국에 배당해야 함.
2. 사업소득면제(Active Income Exemption): CFC는 투자사업과정을 제외한 실질적인 상사거래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 맺어야 함.
3. 공개거래면제(Publicly Traded Exemption): CFC는 거주지국에서 인정하는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야 함.
4. 동기면제(Motive Exemption): 지배주주는 국외소득에 대한 국내과세 연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CFC를 사용할 만한 경제적 목적과 합리적인 사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함.

득의 배당 또는 양도시 처리로 구성됨.

[그림 II-1] CFC의 과세체계



<전제>

1. Y법인에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100 발생(추후 50 배당)하고 X·Y법인 모두 다른 소득은 없음
2. X법인은 Y법인의 100% 주주
3. A국(전세계소득 과세)의 법인세율은 20%, B국(원천지국 과세)의 법인세율은 10%
4. A국과 B국의 조세조약상 원천지국은 이자소득에 대해 10%로 원천징수

〈B국〉				〈A국〉				
	구분	과표	세액		구분	과표	세액	비고
소득 발생	법인세 (Y)	100	10	배당 간주	법인세 (X)	100	20 -10 =10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실제 배당	원천세 (X)	50	5	실제 배당	법인세 (X)	0	-5	· 익금불산입 · 직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

∴ 투자자의 거주지국 세율에 따라 이자소득 100에 대해 최종납세액은 20으로 유지

나. 역외투자펀드 규정

-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기법을 통해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당국은 피지배외국회사 규정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를 고안하게 됨.
 - CFC 규정은 내국인의 특정외국회사 지배(Control)를 전제로 하지만, 지분의 분산 투자를 통해 CFC 규정을 회피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지배요건이 50%인 경우 지분율을 49%로 조정하면 CFC 제도가 적용되지 않게 됨.
 - 따라서 과세당국은 지배(Control) 요건을 보완⁶⁾하거나 지배 요건이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필요로 함.

- 새로운 조세회피방지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수동외국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ies; 이하 'PFIC') 또는 역외투자펀드(Foreign Investment Funds; 'FIF') 규정임.
 - 이들 제도는 내국인의 특정외국회사 지배를 요건으로 하지 않은 반면, 과세소득의 범위를 주로 수동소득(자본이득 및 임대소득)에 한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음⁷⁾.

- 역외투자펀드 제도의 과세체계도 CFC와 거의 유사하게 적용대상, 과세소득, 이중과세방지(공제규정)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적용대상에는 역외투자펀드(지배요건 불요, 법인 이외 신탁·트러스트 포함 여부), 내국인에 대한 규정이 논의됨.
 - 과세소득에는 소득유형(주로 투자소득)과 면제소득에 대한 논의로 구성됨.
 - 이중과세방지규정에는 외국납부세액 공제, 역외투자펀드의 결손금 이월공제, 기

6) 일본의 경우 50% 산정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임원인 비거주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지분도 포함되는데, 이는 외국법인의 주식 보유를 형식적으로 분산시켜 CFC 제도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데에 대한 대항조치임(최경수·최용환, 「조세피난처 세계적용의 국제적 과세동향과 그 시사점」, 『조세학술논집』 제24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p. 151).

7) Arthur Anderse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Examining how other countries approach business taxation," *Review of Business Taxation Discussion Paper*, December 1998, p. 117 (<http://www.rbt.treasury.gov.au/>)

과세된 소득의 배당 또는 양도시 처리에 대한 규정이 포함됨.

- 우리나라는 CFC 규정에서 내국인의 특정외국회사 지배요건을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는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음.

2.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회사 과세제도

- 우리나라의 피지배외국회사(CFC) 규정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로 소개되어 왔음.
 - 외환·자본의 자유화가 확대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1995년 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17조에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도입함.
 - 2009년 말 세법개정은 CFC 규정의 적용지역에서 조세피난처를 제외하면서 CFC 규정의 제목을 ‘조세피난처의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조정’에서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로 변경함.

가. 적용범위

1) 내국인

-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인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해야 함⁸⁾
 -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되는 간접소유비율 계산규정을 준용⁹⁾

8) 국조법 제17조 제2항 전단

9) 국조법 시행령 제34조

-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판단할 때 민법 제799조에 의한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¹⁰⁾

2) 특정외국법인

- 내국인의 출자관계를 전제로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을 특정외국법인이라 함.
 - CFC 제도에 적용되는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은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¹¹⁾의 특수관계 규정에 의함.
 - 동규정의 특수관계는 4가지로 유형화하고 있지만, CFC 제도가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동 규정의 가호만 적용됨.
 - 즉, CFC 제도의 특수관계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의미함.
- 한편, 특수관계 여부를 판정할 때 주식의 간접소유비율 계산은 내국인이 중간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짐¹²⁾.
 - 만일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외국법인 주식에 대한 간접소유비율은 중간법인의 외국법인 주식에 대한 직접소유비율과 동일함.
 - 그러나 50%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중

10) 국조법 제17조 제2항 후단

11) 국조법 제2조 제1항 제8호.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관계
- 나.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양쪽 간의 관계
- 다.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다른 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
- 라.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 당사자 양쪽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거래 당사자 간의 관계

12) 국조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간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중간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의 합계로 산정함.

3) 저세율 국가

- 저세율 국가는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즉, 당해 외국법인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에 대한 조세가 동 법인의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함.
 - 종전에는 저세율 국가 이외에도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을 고시하는 방식을 병행하였으나, 2009년 말 국조법 개정으로 현재는 저세율 국가에만 적용

- 저세율 국가에 특정외국법인의 소재 여부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다만, 저세율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더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저세율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간주함¹³⁾.

나.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 범위

-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실체적 접근방법을 바탕으로 하면서 거래적 접근방법을 일부 가미함¹⁴⁾.
 - 즉, 소득의 종류와 무관하게 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에 대해 적용함.

13) 국조법 제18조 제2항

14) 송성권,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한미 간 비교와 그 시사점」, 계간 세무사 2006년 여름호, p. 77

- 한편, 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¹⁵⁾.
 -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업종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더라도 CFC 과세제도를 적용함.
 - 도매업¹⁶⁾,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대통령령¹⁷⁾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¹⁸⁾에 해당하는 법인
 -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식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¹⁹⁾으로 하는 법인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보유를 주된 사업²⁰⁾으로 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자회사²¹⁾의 주식 등을 보유한 법인(이하 ‘해외지주회사’)이 일정한 요건²²⁾을 모두 갖춘

15) 국조법 제18조 제1항

16)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유럽연합(EU)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국조법 제18조 제4항)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서비스업”이란 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서비스업을 말함(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국조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1.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할 것. 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2.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컴퓨터운영관련업 또는 건축기술·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제외)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금액이 이들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할 것

19) “주된 사업”이라 함은 당해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말함(국조법 시행령 제36조)

20) 상동

21)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 3)

1. 특정외국법인과 같은 지역 등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을 것
2. 특정외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40% 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3. 국조법 제17조제1항(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것

22) 국조법 제18조의 2

제1호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등을 그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경우에는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통한 사업의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²³⁾.

2) 과세소득 제외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실제발생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CFC 제도를 적용하지 않음²⁴⁾.

3)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에 대해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²⁵⁾.

$$\text{배당간주금액} = \text{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times \text{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직·간접비율을 모두 고려하는데, 배당간주금액 계산시 주식간접소유비율 산정방식은 곱셈방식에 의함.
 - 내국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경유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계산함²⁶⁾.
 - 내국인과 특정외국법인 간에 2건 이상의 직렬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은 각각의 직렬관계에서 산출한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²⁷⁾.

제2호 이러한 자회사로부터 해외지주회사가 받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합친 금액이 그 해외지주회사의 소득금액(사무실,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제1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 이상일 것

23) 국조법 제18조의 2

24) 국조법 제17조 제4항

25)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26)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다. 이중과세 방지장치

1)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

- 간주배당금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은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구분됨.
 -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차후 배당금을 실제 지급받는 시점에 당초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소급하여 경정청구에 의해 외국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 것임.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간주배당금액을 익금 등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에 바로 공제받는 것임.

2) 실제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한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한도로 법인세법상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²⁷⁾.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에 직접 출자한 경우에 선이익·선배당 원칙이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임.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 등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한도로 이월익금으로 보거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이월익금 또는 양도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은 10년간 양도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실제 배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27) 국조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

28) 국조법 제20조 제1항

- 이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함.

라. 투자정보 파악수단

- 조세피난처 과세대상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특정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근거, 국외출자명세서 기타 서류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²⁹⁾.
- 거주자는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29) 국조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2항

Ⅲ.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1. 미국

가. 개관

- 외국회사를 이용해 외국에 소득을 유보시켜 내국세 과세를 이연시키는 경우에 적용되는 반이연세제(Anti-deferral Regimes)는 유보소득 과세규정(Accumulated Earnings Tax Rules), 피지배외국회사(CFC)³⁰⁾, 수동외국투자회사(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이하 'PFIC') 규정으로 구성됨.
 - 「2004년 미국 고용창출법(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 of 2004)」에 따라 기존에 존재했던 6개의 반이연세제 중 중복규정이 삭제 또는 조정됨.
 - PFIC 규정이 도입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외국개인지주회사(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와 외국투자회사(Foreign Investment Company) 규정은 PFIC 규정과 중복되어 삭제됨.
 - 개인지주회사(Personal Holding Company) 규정은 외국법인을 제외함으로써 PFIC 규정과의 관계가 명확해짐.
 - 현재 남아있는 제도 중 CFC와 PFIC 규정이 국제조세분야의 반이연세제의 중심임³¹⁾.
 - 실무상 외국회사에 대해 유보소득과세규정은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음³²⁾.

30) 미국 자료에서는 보통 Subpart F로 표시

31) Reuven S. Avi-Yonah, "The Silver Lining: The International Tax Provisions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A Reconsideration,"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05*, IBFD, p. 28

32) Charles H. Gustafson, Robert J. Peroni and Richard Crawford Pugh,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materials, text and problems*, West Group, 2006, P. 571

〈표 Ⅲ-1〉 미국의 반이연세제 유형

유형	IRC 근거규정	도입시기 /폐지시기	비고
유보소득과세규정 (Accumulated Earnings Tax Rules)	§531~537	1913년 도입	
개인지주회사규정 (Personal Holding Company Rules)	§541~547	1934년 도입	내국 회사를 이용한 과세 이연에 적용
외국개인지주회사규정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Rules)	§551~558	1937년 도입 /2004년 폐지	
외국투자회사규정 (Foreign Investment Company Rules)	§1246~1247	1962년 도입 /2004년 폐지	
피지배외국회사규정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951~964	1962년 도입	
수동외국투자회사규정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Rules)	§1291~1298	1986년 도입	

□ 반이연세제의 대표적인 형태가 CFC 제도이지만, 미국에서는 CFC를 회피하는 형태에 대응하기 위해 PFIC 제도를 도입함³³⁾.

○ 1962년 CFC 제도 도입 후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분산시켜 CFC에 해당하지 않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짐.

– 내국인이 외국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한 회사에 내국인 주주(U.S. shareholders)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CFC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따라서 CFC를 회피하도록 지분율을 조정하게 되면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세이연기간 동안 유보소득과 관련한 거주지국 납세액의 현재가치 차이만큼 내국인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게 됨.

○ 이렇게 내국인이 역외투자펀드에 투자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무제한으로 연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액의 현재가치 차이에 기초한 가산금(Interset Charges)을 PFIC의 내국인 주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로 PFIC 세제의 가산금과세법임.

33)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p. 285~286

- 이를 통해 직접 수동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와 외국회사의 지분을 보유하여 수동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자 간에 과세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

나. 적용대상

1) 내국인의 정의

- PFIC 세제는 지배(Control)여부에 상관없이 PFIC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모든 내국인(U.S. Person)에 적용함³⁴⁾.
 - 내국인이 도관(Pass-through Entity), PFIC, Non-PFIC에 출자하고 이러한 실체들이 또다른 PFIC의 주주인 경우에는 해당 PFIC의 간접주주(Indirect Shareholder)가 됨.
 - 간접투자 매개체가 Non-PFIC인 경우 내국인이 Non-PFIC의 지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또한 외국회사에 직·간접적인 출자관계가 없어도 '도관의 이해관계자'(Interest Holder of Pass-through Entities)에 해당하면 PFIC 세제의 적용을 받음.
 - 내국인이 외국에 설립된 도관이나 국내 파트너십, S 법인, 트러스트, Estate에 이해관계가 있고 이러한 실체들이 PFIC의 주주인 경우 도관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함.
 - 또한, 트러스트에 편입된 PFIC 주식의 주주로 간주되는 내국인도 마찬가지임.

2) PFIC의 정의

- 외국회사가 소득요건과 자산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PFIC가 됨.
 - 소득요건(Income Test)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회사의 총소득(Gross Income)의 75% 이상이 수동소득(Passive Income)인 경우를 의미함.
 - 자산요건(Asset Test)은 해당 사업연도 동안 외국회사가 보유한 자산 중 평균 50% 이상이 수동소득을 발생하는 자산³⁵⁾이거나 수동소득의 발생을 위해 보유하는 자

34) IRS General Instructions

산³⁶⁾인 경우를 의미함.

- 자산요건을 계산할 때 상장외국회사(Publicly Traded Foreign Corporations)는 (시가에 의한) 자산의 가격을 사용하지만, 비상장외국회사 중 CFC인 경우나 세무상 취득가액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Earnings and Profits)을 결정할 때 적용하는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Adjusted Bases)을 사용함³⁷⁾.

〈 PFIC 판단기준 〉		
소득요건:	$\frac{\text{수동소득(Passive Income)}}{\text{총소득(Gross Income)}}$	≥ 75%
자산요건:	$\frac{\text{수동자산(Passive Assets)}}{\text{자산(Assets)}}$	≥ 50%

- 소득요건의 판단시 필요한 수동소득(Passive Income)에는 투자소득과 양도소득이 포함됨.
 - 투자소득은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비사업성 임대소득 및 로열티소득을 포함함.
 - 양도소득은 주식, 채권, 선물, 통화 기타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미함.

- 그러나 PFIC가 특수관계자로부터 투자소득을 수취한 경우에는 수동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³⁸⁾.
 - 예를 들어, 외국회사(PFIC)가 모회사로부터 비사업성 임대소득을 수취할 경우 모회사의 임차비용이 모회사의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PFIC의 수동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요건 산식의 분자에 산입되지 않음.

35) 예를 들어, 제조업자가 보유하는 주식과 채권

36) 예를 들어, 신문사가 2년 후 자본 확대를 위해 보유하는 양도성 예금증서

37) IRC §1297(e)

38) IRC §1297(b)(1)

- PFIC의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사업개시연도와 외국회사가 1개 이상 사업을 매각한 연도에 대해서 PFIC 과세를 제외하는 규정을 둠³⁹⁾.
 - 이 두 가지 경우에 회사는 평상시보다 많은 수동소득을 얻게 되어 75% 소득요건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짐.
 - PFIC 과세 제외는 사업개시연도 또는 1개 이상 사업을 매각한 연도 이후 2개 연도에 걸쳐 소득요건이나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조건을 함.

- 한편,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로서 도관규정(Look-through Rule)을 두어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2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를 도관으로 보고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을 계산함.
 - 소득요건을 계산할 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제외하고 자회사의 소득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소득은 추가함.
 - 자산요건을 계산할 때도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을 제외하고, 자회사의 자산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자산은 추가함.

39) IRC §1298(b)(2), (3)

〈사례〉 외국지주회사에 대한 PFIC 요건 계산

주주 중에 미국인이 포함되지만 미국세법상 CFC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회사인 Opal SA사는 Zircon사의 주식을 40% 보유하고 있음. Zircon사는 오직 능동사업자산을 보유하고 능동사업소득만을 얻고 있음. Opal의 총소득에는 Zircon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100만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Opal의 평균자산에는 Zircon 주식 2,200만달러가 포함됨. 2010년 사업연도 동안 이들 회사의 소득과 평균자산은 다음과 같음.

		수동	능동
Opal(모회사)	총소득	2,400만달러	600만달러
	평균자산	1조 1,000만달러	9,000만달러
Zircon(자회사)	총소득	0	1,000만달러
	평균자산	0	6,000만달러

① 도관규정이 없는 경우

Opal사는 소득요건이 80%, 자산요건이 55%가 되어 PFIC가 됨

② 도관규정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Opal사는 소득요건이 69.7%, 자산요건이 43.6%가 되어 PFIC가 되지 않음

소득	2,400만달러 - 100만달러	= 69.7%
요건:	$\frac{2,400\text{만달러} + 600\text{만달러} - 100\text{만달러} + (1,000\text{만달러} \times 0.4)}{2,400\text{만달러} + 600\text{만달러} - 100\text{만달러} + (1,000\text{만달러} \times 0.4)}$	
자산	1조 1,000만 달러 - 2,200만 달러	= 43.6%
요건:	$\frac{1\text{조 } 1,000\text{만 달러} - 2,200\text{만 달러} + (6,000\text{만달러} \times 0.4)}{1\text{조 } 1,000\text{만 달러} + 9,000\text{만달러} - 2,200\text{만 달러} + (6,000\text{만달러} \times 0.4)}$	

자료: Ernest R. Larkins(2004), p. 291

□ PFIC는 CFC와 달리 지분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주로 수동투자활동을 위해 해외에 투자한 대부분의 펀드가 PFIC에 해당함⁴⁰⁾.

○ PFIC에서 ‘수동의(Passive)’이란 단어에도 불구하고 능동사업(Active Business)을 수행하는 외국회사도 자주 PFIC에 해당됨.

– 그 이유는 외국회사가 수동투자활동에 참여하는지 사업활동을 영위하는지에 상관없이 한번 PFIC에 해당하면 계속 PFIC 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임⁴¹⁾.

40)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 287

41) §1298(b) (1) Time for determination

Stock held by a taxpayer shall be treated as stock in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if, at any time during the holding period of the taxpayer with respect to such stock, such corporation (or any predecessor) was a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which was not a qualified

- 내국인의 PFIC 주식 보유기간 동안 PFIC가 CFC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CFC 보유기간에 대해서 PFIC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⁴²⁾.

3) CFC 제도와의 적용대상 비교

- CFC 세제가 적용되려면 내국인(U.S. Shareholders), 피지배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요건을 충족해야 함.
- CFC 세제에서 내국인이란 외국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는 자를 의미함.
 - 이러한 내국인들의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율 또는 보유주식 가치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당해 외국회사는 피지배외국회사가 됨.
- 반면, PFIC 세제는 내국인의 범위와 내국인들의 지분율을 고려하지 않고 외국회사의 범위만 제한함.
- 총소득에서 수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75% 이상이거나 평균자산에서 수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하면 PFIC로 인정됨.

〈표 Ⅲ-2〉 미국의 CFC와 PFIC의 적용대상 비교

	CFC	PFIC
내국인	CFC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	모든 납세자
외국회사	내국인들이 합산하여 CFC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주식가치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내국인들 간의 관련성은 불문)	외국회사의 총소득 중 수동소득의 비율이 75% 이상 또는 평균자산 중 수동자산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조세피난처	모든 지역 ¹⁾	모든 지역

주: CFC 과세소득 중 보험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외국기지회사소득은 미국 법인세 최고법정세율의 90%보다 높은 실효세율(Effective Rate)로 외국에서 과세되었음을 납세자가 증명할 경우에 과세소득(Subpart F Income)에서 제외함(IRC §954(b)(4)).

electing fund.

42) IRC §1297(d)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 범위

- PFIC 세제는 CFC 세제와 달리 과세소득의 범위를 유형화하지 않고 있으므로, PFIC가 얻은 모든 유형의 소득이 과세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 다만, PFIC요건을 충족하려면 소득요건과 자산요건에서 수동소득 및 수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75%, 50% 이상이어야 하므로, PFIC 세제는 주로 수동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한편, PFIC의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면제규정(De minimis Rule)은 없음.

2) 과세소득 계산방법

가) 가산금과세법

- PFIC의 내국인 주주가 적격펀드과세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PFIC에 대한 지분 보유기간 중 적격펀드과세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⁴³⁾에 대해서 가산금과세법이 적용됨.
 - 가산금과세법은 납세자가 PFIC 보유주식에 대해 실제 배당받거나 PFIC 주식을 처분할 때 과세이연한 기간 동안에 귀속되는 이자혜택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임.
 - 과거에 배당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평균적인 배당액보다 훨씬 상회하는 배당금(초과배당금)을 받게 되면 그동안 유보소득을 이연해오다가 일시에 배당한 것으로 보아 유보소득에 대한 본세에 추가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임.

- 총초과배당금(Total Excess Distribution)은 당기에 PFIC에서 받은 배당금이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해당 주주에 대한 배당금 평균액의 125%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의미함.

43) 내국인의 PFIC 지분 보유기간 내내 적격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순수적격펀드(Pedigreed QEF)라 하고, 동 보유기간 중 일부만 적격펀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순수적격펀드(Unpedigreed QEF)라 함(Reg §1.1291-9(j)(2)).

- 주식을 보유한 첫 해에 수취했거나 수취한 것으로 간주된 배당금은 초과배당금으로 간주하지 않음⁴⁴⁾.

〈 초과배당금의 계산 〉

총초과배당금 = 당기 총배당액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총소득에 포함된 배당금의 평균 × 125%)

- 초과배당금은 분배된 기간의 특성에 따라 세무상 효과에서 차이가 남.
 - 당해 과세기간 또는 PFIC가 되기 전의 보유기간에 배당된 부분은 일반소득 (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됨.
 - 반면 PFIC인 기간 동안 배당된 부분은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이연세액 (Deferred Tax Amount)을 계산함.

〈사례〉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및 이연세액 계산

미국 시민권자인 브라이언은 2000년 1월 1일에 케이만군도 법인으로서 12월 말 결산법인인 Starburst Investment, Ltd의 주식을 취득함. Starburst사는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수동외국투자회사(PFIC)이며, 브라이언의 보유주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당함.

2002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3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4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5년 12월 31일 20만달러
 2006년 12월 31일 95만달러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초과배당금(Excess Distribution)이 산출되지 않음. 반면, 2006년에는 총초과배당금이 70만달러(95만달러 - 20만달러의 125%)로 산출되었고 초과배당금이 아닌 나머지 부분은 25만달러임. 브라이언은 이 초과배당금 70만달러를 보유기간 7년으로 나누어 매년 10만달러씩 배분함. 이에 따라 수동외국투자회사가 되기 이전인 2000년, 2001년에 배분된 20만달러와 2006년 배분된 10만달러는 2006년 귀속 총소득(GI)에 포함되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배분된 40만달러는 이연세액 계산에 이용됨.

따라서 2006년에 95만달러를 받은 브라이언은 2006년 귀속 소득세신고서에 55만달러(초과배당금이 아닌 배당금 25만달러 + 2006년에 배분된 초과배당금 10만달러 + 2000년, 2001년에 배분된 초과배당금 20만달러)를 총소득으로 신고함. 그리고 매년 가산금 이자율을 연10%로 가정할 때, 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이연세액(DTA) 190,700달러를 납부해야 함.

44) IRC §1291(b)(2)(B)

	본세	가산금
2002	38,600달러(100,000 × 38.6%)	15,440달러(38,600달러 × 10% × 4년)
2003	38,600달러(100,000 × 38.6%)	11,580달러(38,600 × 10% × 3년)
2004	37,600달러(100,000 × 37.6%)	7,520달러(37,600 × 10% × 2년)
2005	37,600달러(100,000 × 37.6%)	3,760달러(37,600 × 10% × 1년)
합계	152,400달러	38,300달러
이연세액	190,700달러	

자료: Ernest R. Larkins(2004), pp. 294~295

〈사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소득 및 이연세액 계산

미국 법인인 Periwinkle, Inc.는 2001년 1월 1일에 버뮤다 법인인 Coquina, Ltd.(수동외국투자회사에 해당)의 주식 3만달러를 취득함. 2004년 12월 31일에 Periwinkle은 보유주식을 7만달러에 매각하여 4년 보유기간에 걸쳐 4만달러의 양도차익을 배분함. Periwinkle의 2004년 Marginal tax rate는 34%이고 가산금 이자율은 연 8%로 가정할 때 Periwinkle는 주식매각을 통해 다음과 같이 15,580달러의 세액을 계산하게 됨.

	본세	가산금
2001	3,500달러(10,000 × 35%)	840달러(3,500 × 8% × 3년)
2002	3,500달러(10,000 × 35%)	560달러(3,500 × 8% × 2년)
2003	3,500달러(10,000 × 35%)	280달러(3,500 × 8% × 1년)
합계	10,500달러	1,680달러
이연세액	12,180달러	
2004	3,400(10,000 × 34%)	
총세액 ¹⁾	15,580달러	

주: 1)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없는 경우를 전제

자료: Ernest R. Larkins(2004), p. 296

나) 적격펀드과세법

□ 가산금과세법의 대안으로서 납세자는 PFIC 보유주식을 적격펀드(Qualified Electing Fund; QEF)의 주식으로 간주되도록 선택할 수 있음.

○ 또한 외국회사가 PFIC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도 납세자는 보유주식이 PFIC 주식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장치로서 적격펀드과세법을 선택할 수 있음.

□ 적격펀드과세법은 PFIC의 소득항목에 대해 PFIC가 외국지점인 것과 같은 세무상 결

과를 가져옴.

- 이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는 매년 QEF의 일반소득(Ordinary Earning) 중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납세자의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QEF의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을 납세자의 장기자본이득(Long-term Capital)으로 분류하여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시켜야 함.
- 또한 CFC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내국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Stock Basis)을 조정해야 함.
 - 소득금액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받지 않은 소득은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증액조정함.
 - 반면, 실제 수취하지 않았지만 총소득으로 신고했던 소득을 실제 배당받게 되면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조정함⁴⁵⁾.

〈사례〉 적격펀드 선택여부에 따른 과세차이

2003년 1월 1일에 미국 법인인 Sunbelt Packaging, Inc.는 PFIC인 Tech First SA의 20% 지분을 420만달러에 취득함. 두 회사는 모두 12월 말 결산법인임. 2003년, 2004년에 Tech First는 다음과 같이 소득을 얻어 이익을 배당함.

	2003년	2004년
Ordinary Income	100만달러	200만달러
Net Capital Gain	400만달러	0
Distribution of Earnings	0	700만달러

① 적격펀드(QEF)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Sunbelt는 2004년에 초과배당금이 140만달러로 계산됨. 따라서 Sunbelt는 Ordinary Gross Income으로 70만달러(140만달러/2년)를 신고하고, 가산금 이자율을 연 10%로 가정할 때 269,500달러[(70만달러×35%) + (70만달러×35%×10%)]의 이연세액을 납부하게 됨.

② 적격펀드를 선택한 경우

Sunbelt는 2003년에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20만달러(100만달러×20%), 순자본이득(Net Capital Gain)으로 80만달러(400만달러×20%)를 신고하고,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520만달러(420만달러+20만달러+80만달러)로 증액함. 2004년에 140만달러(700만달러×20%)의 배당금을 받아 일반소득(Ordinary Income)으로 40만달러(200만달러×20%)를 신고하고, 주식

45) IRC §1293(d)

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420만달러(520만달러-140만달러+40만달러)로 감액함.

		적격펀드 미선택	적격펀드 선택
2003년	Ordinary Income	0	20만달러
	Net Capital Gain	0	80만달러
	이연세액	0	0
2004년	Ordinary Income	70만달러	40만달러
	Net Capital Gain	0	0
	이연세액	269,500달러	0

자료: Ernest R. Larkins(2004), pp. 299~300

- 외국회사가 PFIC로 인정받는 해부터 적격펀드과세법을 선택하게 되면 납세자는 가산금과세법에 의한 과세를 완전히 회피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방식을 선택하기 전에 PFIC인 상태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여전히 가산금과세법(시가과세법 미선택 전제)이 적용됨.
 - 이러한 경우 간주매매과세법(Deemed Sale Election)을 통해 납세자가 보유지분을 처분한 것처럼 이익(gain)을 인식하여 가산금과세법에 의한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음⁴⁶⁾.

- 적격펀드과세법은 이연혜택을 종료시키는 측면이 있지만 가산금과세법의 불공평성과 복잡성을 일부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⁴⁷⁾.
 - 첫째, 초과배당금을 받거나 PFIC 주식처분으로 인해 이익(gain)을 인식하는 납세자가 최고법정세율의 적용을 피할 수 있음.
 - 둘째, 당해 외국회사를 도관으로 인식해 PFIC에 발생된 소득의 성격(예를 들어, 순자본이익)을 주주단계에서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셋째, PFIC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납세자가 양도차익을 자본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음.

46) IRC §1291(d)(2)

47)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p. 299

- 반면, 적격펀드과세법은 납세자가 외국회사에 발생된 소득금액 중에 보유지분율만큼 총소득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이 방식을 선택한 납세자가 소수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납세자가 실제 수취하지 못한 소득에 대해 납세액의 납부를 요구하게 되므로 납세액의 재원이 없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실제 배당을 받거나 적격펀드의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적격펀드의 유보소득(Undistributed Earnings)에 대한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함⁴⁸⁾.
 - 이때 국세청은 이연된 세금에 대해 가산금을 부과하며, 세수를 보존하기 위해 납세자에게 이연세액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또한 납세자가 적격펀드과세법의 선택을 취소하거나 징세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연장을 종료할 수 있음⁴⁹⁾.

- 적격펀드과세법을 한 번 선택하게 되면 외국회사가 PFIC의 지위를 잃게 되더라도 선택 이후 모든 연도에 동 과세법이 적용됨.
 - 납세자는 국세청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이를 취소할 수 있음⁵⁰⁾.

다) 시가과세법

- 납세자는 가산금과세법에 의한 이연세액을 줄이기 위해 시가과세법(Mark-to-market Elections)을 선택할 수 있음.
 - 이 방식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거나 시가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PFIC 주식을 보유한 내국인에게만 적용됨⁵¹⁾.

48) IRC §1294(a)(1)

49) IRC §1294(c),(e)

50) IRC §1295

51) IRC §1296(e)(1)(A)

- 시가과세법을 선택하게 되면 납세자는 그러한 선택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 날에 PFIC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인식해야 함⁵²⁾.
 - 또한 한 번 선택하게 되면 당해연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연도에도 계속 적용되며, 매년 시가변동분(Market Value Changes)에 대해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으로 인식해야 함.
 - 다만, PFIC 주식이 시장성을 상실하거나 납세자가 국세청의 동의를 얻어 취소한 경우에는 시가과세법의 효력이 소멸됨⁵³⁾.
 - 양도차익을 인식하는 경우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Stock Basis)을 증액조정해야 하는 반면, 공제가능한 양도차손을 인식하는 경우 주식의 세무상 취득가액을 감액조정해야 함⁵⁴⁾.
 - 총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이나 공제가능한 양도차손은 일반소득(Ordinary Income) 또는 일반손실(Ordinary Loss)로 간주됨⁵⁵⁾.

라) 각 계산방식에 대한 실무상 분석⁵⁶⁾

- 가산금과세법은 실현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현금을 보유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고법정세율 적용, 손실불공제, 가산금 부과로 인해 다른 계산방식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음.
 - 비교적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장기자본이득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모든 과세소득은 일반소득에 대한 최고법정세율이 적용됨.
 - 또한 PFIC가 초기에 손실이 계속 발생하다가 실제 배당하게 된 마지막 해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산금과세법은 PFIC 주식의 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소득을 분배하고 매년 가산금을 부과함.

52) IRC §1296(a)

53) IRC §1296(k)

54) IRC §1296(b)(1)

55) IRC §1296(c)(1)

56) http://www.riserlaw.com/text/pfic_txt.htm

- 시가과세법은 다른 계산방식에 비해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간단한 장점이 있는 반면, PFIC가 갖추어야 할 요건들 때문에 많은 헤지펀드에 적용되기 어려움.
 - 대표적으로 펀드가격이 공시되는 거래소에 등록되어야 하며, 최소투자금액이 1만 달러 미만일 것을 요건으로 함.
 - 그러나 많은 역외헤지펀드들은 가격이 공시되는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으며, 최소 투자금액이 높은 편임.

- 적격펀드과세법은 가산금과세법과 비교하여 적용세율이나 소득의 성격 측면에서 유리하고 실현시점까지 유보소득에 대한 납세연기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적격펀드에 대해 요구되는 회계처리 및 장부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 적격펀드과세법을 적용하는 미국인 투자자는 많지 않음.
 - 대부분의 역외펀드는 장부와 세무기록을 보유하지 않고, 미국인 주주에 대한 세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실제 배당시 기과세 소득에 대한 처리

- 가산금과세법은 기과세 부분에 대한 과세소득의 중복합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지 않음.
 - 실현되지 않은 유보소득에 대해 미리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배당된 때에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합산하기 때문임.

- 한편, PFIC가 실제 배당한 금액에 적격펀드선택법에 의해 기과세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 해당부분은 비과세 배당소득으로 봄⁵⁷⁾.

57) IRC §1293(c)

2) 외국납부세액 공제

- 자산금과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PFIC 주식에 대해 실제 배당된 금액과 관련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가능⁵⁸⁾.
 - 외국회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하는 미국인이 배당금을 받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Deemed Paid Credits)를 신청할 수 있음.
 - 또한 외국회사를 관할하는 과세당국이 배당소득에 대해 부과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도 공제신청할 수 있음.
 - 한편, 직접납부세액 공제방식은 납세자가 이를 선택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함.

- 자산금과세법이 적용되는 경우 공제하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납세자는 당기 총소득(당기, 1987년 이전 또는 PFIC 적용 전 연도에 분배되는 소득)에 포함되는 초과배당금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당기 외국납부세액공제(FTC)로 취급⁵⁹⁾.
 - 그러나 이연세액이 귀속되는 연도(당기, 1987년 이전, PFIC 적용 전 연도 제외)에 분배되는 초과배당금에 대해서는 이연세액 중 본세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처리함.

- 적격펀드선택법에 의한 경우 배당 또는 이익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인정함.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1) 납세의무자의 신고·정보보고

- 역외계좌와 관련된 정보보고에 대하여 2010년에 신설된 규정⁶⁰⁾에 따라 PFIC 주주들

58) IRC §1291(g)

59) IRC §1291(g)

60) 2010년 3월 18일에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고용회복을 위한 고용장려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은 ‘역외계좌 납세이행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FATCA)’을 포함하고 있음. FATCA는 연방내국세법에 §1298(f)를 신설하도록 하여 PFIC 주주에게 연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은 연간 신고서(Annual Return)를 제출해야 함.

- 신설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서 국세청은 이 규정의 해석에 대한 지침을 개발 중에 있음⁶¹⁾.
- 이러한 지침이 완성되기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Form 8621 제출제도를 적용함.

□ PFIC 주주는 소득세 신고서에 Form 8621을 첨부하여 납부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며, 당해 연도에 소득세 신고서나 다른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Form 8621을 직접 제출해야 함⁶²⁾.

- 수 개의 PFIC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회사별로 각각 Form 8621을 제출해야 함.
- 한편, 해당 주주가 1개의 PFIC 주식을 보유하고 그 PFIC를 통해 1개 이상의 다른 PFIC를 보유하게 되면 해당 주주는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함.
 - Chains of Ownership에 있는 각 PFIC별로 Form 8621을 제출함.
 - 첫 번째 PFIC에 대한 Form 8621을 작성하고 첨부서류에 각각의 PFIC에 대한 Form 8621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함.

□ ‘도관의 이해관계자’인 내국인도 해당 도관이 Form 8612을 제출하지 않거나 내국인이 가산금과세법에 따라 소득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에는 Form 8621을 제출해야 함.

□ Form 8621 이외에도 PFIC의 주주는 과세기간 초에 보유한 종류별 주식수, 과세기간 동안 종류별 주식수의 변동과 변동일, 과세기간 말에 종류별 주식수에 대한 정보를 첨부해야 함.

61) Internal Revenue Bulletin: 2010-17, April 26, 2010, Notice 2010-34

62) www.irs.gov/instructions/i8621/ch01.html

2) 금융정보 모니터링 제도⁶³⁾

- 미국은 2001년부터 QI(Qualified Intermediary) 제도를 도입하여 역외금융기관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고 거주지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정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및 세율 등에 차등을 두고 있음.
 - 납세자의 신고·정보 보고는 납세자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제3자의 정보 보고 제도가 QI제도임.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역외금융기관이 미국 국세청과의 약정 하에 미국 국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감사를 받는 것임.

- QI는 특정 고객에 대해 미국세법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정보보고의무를 부담함.
 - Know-Your-Customer(KYC) 절차를 이행하여 계좌의 소유주가 수익적 소유자인지를 문서화함.
 - QI는 납세자의 인적사항과 관련된 W-9(거주자)나 W-8BEN(비거주자)을 미국의 증권을 매매하는 고객으로부터 수취해야 함.
 - QI가 선택한 외부감사인을 통해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함.

3) 정보교환협정 등

- 미국은 유럽의회(Council of Europe)의 비회원국으로서 1989년에 다자 간 조약인 ‘국제조세행정공조조약(Convention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Tax Matters)’에 가입한 상태임.
 - 이는 유럽의회와 OECD 회원국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서 2010년 8월 현재 21개국⁶⁴⁾이 가입되어 있음.

63)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pp. 44~45

64) 유럽의회 비회원국으로서 캐나다(2004), 한국(2010), 멕시코(2010), 미국(1989)이 현재 가입된 상태임.

- 이 조약은 특히 조세회피와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점에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서 국가 간에 가능한 모든 형태의 행정적 협력을 제공하는 것임.
 - 행정적 협력의 범위는 정보교환에서 외국세액공제의 회수(Recovery of Foreign
Tax Claims)에 이르는 것임.

- 한편, 미국은 2010년 8월 현재 다음과 같이 총 12개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TIEAs)을 체결함.
 - Antigua And Barbuda, Cayman Islands, Bahamas, British Virgin Islands, Netherlands
Antilles, Guernsey, Isle of Man, Jersey, Aruba, Liechtenstein, Gibraltar, Monaco

- 그 외에도 미국 국세청과 영국, 캐나다, 호주 세무당국은 실시간으로 국제적인 조세
피난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에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er; JITSIC)를 설립함.
 -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 사무소는 워싱턴 DC에 설립되었으며, 2007년 9월에는 영
국 런던에 두 번째 사무소를 확장하면서 일본이 다섯 번째 회원이 되었음.
 - 중국(2008년)과 한국(2009년)은 observer 상태임.

2. 독일

가. 개관

- 독일 세법은 거주지국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배치(Relocation)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⁶⁵⁾을 두고 있음.

65) 이러한 규정은 소득과 재산의 재배치가 저세율 국가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
분할 수 있음.(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29~GER/30)
첫째, 저세율국로의 소득과 재산의 재배치에 적용되는 경우
– 국제조세법(Aussensteuergesetz) §2: 저세율국으로의 주소 변경
– 국제조세법 §7: 역외중간회사에 대한 투자

○ 특히 국외 기관(Vehicles)을 통한 소득과 재산의 재배치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중간 회사(Ausländischen Zwischengesellschaften)와 가족재단(Familienstiftungen) 세제를 운영하고 있음.

□ 독일의 역외중간회사 세제⁶⁶⁾는 지배요건을 필요로 하는 CFC 세제 뿐만 아니라, 지배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PFIC나 FIF 세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역외중간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이상인 자나 1% 미만인 자에게도 역외중간회사 세제가 적용됨.

– 이는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해 1992년에 도입된 것으로서 CFC와는 별도로 과세소득 계산 규정을 두지는 않으나, 지분율 요건의 측면에서 보면 PFIC나 FIF 세제로 볼 수 있음.

□ 가족재단 규정은 트러스트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인에만 적용되는 역외중간회사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영미법상 개념인 트러스트는 독일법에서 도관, 과세실체(Taxable Entity), 가족재단, 투자펀드로 구분⁶⁷⁾되고 있음.

둘째, 고세율국·저세율국의 구분없이 모든 소득과 재산의 재배치에 적용되는 경우
 - 국제조세법 §1: 이전가격
 - 국제조세법 §6: 내국법인의 적격지분을 보유하는 국외이주자의 재산 증가에 대한 과세
 - 국제조세법 §15: 역외가족재단
 - 법인세법 §8(3): 사업상 주주에 부여된 특혜에 대한 간주배당
 - 법인세법 §8a: 내국법인의 주주에 적용되는 과소자본 규정
 - 법인세법 §12: 내국법인의 본부 또는 소재지를 국외로 이전
 - 조세기본법 §42 일반적인 납용 규정

66) 해외자료에서는 이를 대체적으로 독일의 CFC 세제로 소개하고 있음. 그러나 CFC 세제는 외국 회사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하는 반면, 독일의 역외중간회사 세제는 '지배'를 전제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보충적인 지분율 요건으로서 '지배'를 전제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하 보고서에서는 역외중간회사 세제로 소개함.

67) 트러스트의 설정자나 수익자가 직·간접적으로 트러스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 경우 해당 트러스트는 도관으로 보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실체로 봄. 트러스트를 과세실체로 보는 경우 국제조세법상 가족재단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트러스트는 가족재단으로 파악함. 투자세법(Investmentsteuergesetz)상 위험의 분산 등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투자펀드로 봄. (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42~GER/44)

나. 적용대상

1) 역외중간회사

- 역외중간회사 세제는 지분율 요건에 상관없이 저세율국에 소재한 역외중간회사를 적용대상으로 함.
 - 수동적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25% 미만인 경우 저세율국으로 구분됨.
 - 역외중간회사 세제의 지분율 요건은 수동적 소득의 유형과 비율에 따라 50% 이상, 1% 이상, 지분율 무관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일반적인 지분율 요건은 내국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역외중간회사의 지분 또는 의결권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임⁶⁸⁾.
 - 이는 전형적인 CFC 세제의 지분율 요건으로서 독일은 내국인 각자의 최소지분비율도 필요로 하지 않음.
 - 법인의 자본이 없거나 의결권이 없는 경우에 지배요건은 역외중간회사의 자산에 대한 투자비율에 의함⁶⁹⁾.
 - 내국인이 직접 또는 파트너십을 통해 역외중간회사에 투자한 파트너십의 파트너인 경우 해당 내국인은 역외중간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⁷⁰⁾.

- 보충적인 지분율 요건 중 하나의 유형으로서 역외중간회사가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을 발생시키고 이러한 역외중간회사에 1% 이상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임⁷¹⁾.
 - 지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투자자에게 간주배당 규정이 적용되므로, 지분율 요건 측면에서 볼 때 PFIC 또는 FIF 세제에 해당함.

68) 국제조세법 §7(2)1문

69) 국제조세법 §7(2)3문

70) 국제조세법 §7(3)

71) 국제조세법 §7(6)1문

○ 다만,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이 8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총소득의 10%를 초과하지 않으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⁷²⁾.

□ 보충적인 지분을 요건 중 또다른 유형으로서 역외중간회사의 소득 중 ‘수동적 투자소득’이 전부이거나 거의 대부분(90%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율 요건을 아예 따지지 않는 경우임⁷³⁾.

○ 다만 이러한 역외중간회사의 지분이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거래되면 역외중간회사 세제가 적용되지 않음.

2) 가족재단

□ 가족재단 세제는 저세율국 유무에 상관없이 역외에 설정된 트러스트를 적용대상으로 함.

○ 역외트러스트 중 설립자, 설립자의 친척과 그들의 상속인들이 수익이나 잔여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를 ‘가족재단’으로 봄⁷⁴⁾.

다. 과세소득

1) 역외중간회사 세제의 과세소득 범위

□ 역외중간회사 세제에서 소득합산의 대상은 수동적 소득에만 포함함.

○ 수동적 소득이란 국제조세법 §8(1)에 열거된 능동소득을 제외한 것을 의미함.

72) 국제조세법 §7(6)2문

73) 국제조세법 §7(6)3문

74) 국제조세법 §15(2); 이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독일인인 Berger씨가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미국 트러스트를 설정하였는데, 이 트러스트의 수익자는 B, C, D임. B는 트러스트의 해산 시 전체 자산을 취득하고, C와 D는 트러스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예정임. 이때, ① C와 D가 Berger씨의 가족이 아닌 경우, ② B가 Berger씨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해당 트러스트가 독일 세법상 ‘가족트러스트’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반면, ③ B와 C가 Berger씨의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트러스트로 인정받을 수 없음.

- 즉, 농업·임업, 광업·제조업·가공업, 금융업, 무역업, 서비스업, 임대차·리스, Group Financing,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분매각에 의한 자본이득⁷⁵⁾을 열거하고 이와 관련된 소득을 능동소득으로 봄.

-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수동적 소득(Regular Passive Income)’, ‘수동적 투자소득’(Passive Investment Income)으로 구분됨.
 - 수동적 투자소득은 현금, 현금등가물, 채권, 주식, 보유지분 기타 자산에 대한 보유, 관리, 가치보존 또는 가치평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 것⁷⁶⁾으로서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에 의한 이자와 배당소득을 포함함⁷⁷⁾.
 - 수동적 소득 중 ‘수동적 투자소득’을 제외한 것이 ‘일반적인 수동적 소득’임.

2) 역외중간회사 세제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은 간주배당방식에 따라 실제 분배된 것처럼 내국인 주주의 과세소득에 포함됨.
 - CFC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수동적 소득이 합산되고, 모든 내국인 주주에게 영향을 주게 됨.
 - 반면, PFIC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동적 소득 중 수동적 투자소득만 합산되고, 소득 합산을 해야 하는 주주의 범위는 두 가지로 구분됨.
 - 1% 이상의 지분요건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1%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만 소득합산 규정이 적용됨.
 - 1% 이상의 지분요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내국인 주주에게 영향을 주게 됨.

75) 자본이득이 투자활동에 이용되는 자산이 아닌 다른 자산에 분배된 경우에 한정되므로, 수동적 투자소득과 구분됨.

76) 국제조세법 §7(6a)

77) Shawn M. Brade, Ann Kippen and Firoz K. Talakshi,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ation Regimes in Selected Countries*, Advisory Panel on Canada's System of International Taxation, April 2008, p. 14

-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러한 수동적 손실은 동일 회사의 수동적 소득에 대해 상계할 수 있음.
 - 한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손실은 동일한 내국인 주주가 투자한 다른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데 이용될 수 없음⁷⁸⁾.
 - 이러한 손실금액은 소급공제 또는 이월공제될 수 있는데⁷⁹⁾, 이 경우에도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된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될 수 있음.

- 역외중간회사가 수동적 소득과 능동적 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즉, 혼합 소득(Mixed Income)이 있는 경우 수동적 소득과 비용은 별도로 계산되어야 함.
 - 그러나 능동적 사업과 수동적 사업의 차이가 매우 불명확하고, 수동적 소득에 경제적으로 관련된 사업비용만이 공제가능⁸⁰⁾하기 때문에 독일 세무당국은 간소화된 계산식을 이용함⁸¹⁾.
 - 따라서 합산금액은 본점과 고정사업장 간에 이익 배분을 위해 적용되는 직접법 또는 간접법에 기초하여 결정될 수 있음⁸²⁾.

- 소득합산방식과 관련하여 주주는 현금주의 방식 또는 발생주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음⁸³⁾.
 - 현금주의 방식⁸⁴⁾은 총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하여 계산하는 방식인 반면, 발생주의 방식⁸⁵⁾은 대차대조표에 근거하여 계산하는 방식임.

78) 독일 재무부 자료, 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βensteuergesetzes 10.1.1.3.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m_53848/sid_56DC10223F0DF5622A850ABEA55D83F4/DE/BMF_Startseite/Aktuelles/BMF_Schreiben/Internationales_Steuerrecht/020,property=publicationFile.pdf)

79) 국제조세법 §10(3)5문

80) 국제조세법 §10(4)

81) 독일 재무부 자료, Grundsätze zur Anwendung des Auβensteuergesetzes 10.4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nm_53848/sid_56DC10223F0DF5622A850ABEA55D83F4/DE/BMF_Startseite/Aktuelles/BMF_Schreiben/Internationales_Steuerrecht/020,property=publicationFile.pdf)

82) Robert Amann, *German Tax Guide*, Kluwer Law International, p.546

83) 국제조세법 §10(3)2문

84) 소득세법 §(3)

- 발생주의 방식에 의할 경우 소득합산 금액은 역외중간회사의 대차대조표 금액에 의할 수 있음.
 - 따라서 내국인 주주는 보유지분에 대해 별도의 기장의무를 부담하지 않음.
 - 그러나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역외중간회사가 장부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내국인 주주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합산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 내국인 주주가 1인 이상인 경우 주주 1인별 소득합산 금액은 지분율에 따라 결정됨.
-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을 주주의 소득합산 금액으로 분배할 경우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만 적용되고,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는 소득합산 금액이 발생하지 않음.
 - 내국인 주주가 국내·외 파트너십을 통해 역외중간회사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역외중간회사의 소득은 내국인 주주가 아닌 파트너십의 소득합산 금액으로 분배됨.
 - 역외중간회사가 자본금이 없는 경우 또는 정관에서 수익분배기준과 관련하여 자본금을 언급하지 않은 경우에 분배될 소득합산 금액은 당해 회사의 수익분배방식에 의함⁸⁶⁾.
- 수동적 소득에 대한 간주배당과세는 실제 배당에 대한 과세와 유사하게 처리되지만, 실제 배당에 적용되는 법인과 주주 간 이중과세방지규정은 역외중간회사 세제의 간주배당금액에는 적용되지 않음⁸⁷⁾.
- 독일 세법은 법인이 주주에 배당할 경우 법인 주주는 배당금의 95%⁸⁸⁾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여 법인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 주주는 배당금의 40%를 비과세 대상으로 하는 부분과세제도(Partial-income System)

85) 소득세법 §4(1), §5

86) 국제조세법 §7(5)

87) 국제조세법 §10(2)3문, 소득세법 §3 no. 40, 법인세법 §8b(1)

88) 국내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지분율, 보유기간, 원천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100% 비과세이지만, 총배당금의 5%를 비공제 사업비용으로 보아 과세소득에 합산함.

를 적용하거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함.

3) 가족재단 규정상 특례

- 트러스트가 가족재단에 해당하면 별도의 실체로 보되 설립자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세무처리됨.
 - 트러스트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고 항상 납세자에게 그 소득을 분배할 의도가 있다면 납세자는 트러스트가 소득을 수취한 때 트러스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됨⁸⁹⁾

- 가족재단 규정에 의한 과세소득 합산은 합산소득의 범위와 유형에 있어서 역외중간회사 세제와 차이가 남⁹⁰⁾.
 - 설립자 등에게 가산되는 소득의 대상은 한 개 이상의 수익원천에서 발생한 개별소득 그 자체가 아니라 역외가족재단의 총소득을 의미함.
 - 또한 능동적 소득과 수동적 소득 간에 차이를 두지 않음.

- 합산소득의 계산은 독일세법의 규정에 의하며, 마이너스 소득은 소득합산에서 고려되지 않고,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일반 규정에 따라 이월공제 또는 소급공제될 수 있음⁹¹⁾.
 - 이는 2009년에 가족재단에 적용되는 소득합산 금액 결정에 대한 규정이 국제조세법에 신설된 것임.

- 가족재단이나 트러스트가 EU 또는 EEA 가입국에 소재하고 본점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설립자나 수익자에 대해 실제 분배되지 않은 경우 소득합산을 적용하지 않음⁹²⁾.

89) 국제조세법 §15(1)

90) Ulrich-Peter Kinzl, *Conflicts in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rson*, IFA Cahiers Volume 92B, 2007, p. 278

91) 국제조세법 §15(7)

92) 국제조세법 §15(6)

- 이 규정은 유럽위원회가 독일의 역외중간회사 세제가 EC 조약상 거주 이전과 자본이동의 자유와 조화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진행된 소송⁹³⁾ 결과에 따라 2009년에 국제조세법에 신설한 것임.
- 이러한 소득합산 배제조항은 설립자 등이 실질적으로나 법률상으로나 해당 펀드를 처분하지 않아야 하고, 가족재단이나 트러스트가 설정된 국가와 독일 간에 조세행정협력조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됨.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조정

-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은 소득공제방식⁹⁴⁾ 또는 세액공제방식⁹⁵⁾이 있음.
-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방식 보다 세액공제방식이 선호되는데, 세액공제방식은 납세자의 신청을 필요로 함.

〈사례〉

독일 내국인 A는 홍콩법인의 100% 주주이고, 이 법인이 수동적 소득이 1백달러 발생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단, 홍콩의 법인세율 16%, 독일의 개인소득세율 42%로 가정)

소득공제방식		세액공제방식	
A의 간주배당금	1,000,000달러	A의 간주배당금	1,000,000달러
- 홍콩 법인세(소득공제)	-160,000달러	× 독일 개인소득세율	× 42%
= 소득공제 후 금액	=840,000달러	= 독일 개인소득세	420,000달러
× 독일 개인소득세율	× 42%	- 홍콩 법인세(세액공제)	- 160,000달러
= 최종 세부담	352,800달러	= 최종 세부담	= 260,000달러

93) 2006년 유럽사법재판소 Cadbury Schweppes 사건

94) 국제조세법 §10(1)

95) 국제조세법 §12(1)

- 가족재단 세제에서도 가족재단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내국인 주주의 내국세에서 공제될 수 있음⁹⁶⁾.

2) 기배당에 대한 소득비합산

-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적 소득이 실제 배당되는 경우 수취한 배당소득은 주주단계에서 전부 비과세됨⁹⁷⁾.
 - 이 규정은 배당한 연도와 직전 7년 동안에 발생한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됨.
 - 역외중간회사의 소득을 7년 동안 배당하지 않으면 법인과 주주 간 이중과세방지 규정(법인주주 95% 비과세, 개인주주 40% 비과세)에 따라 과세됨.
- 역외중간회사의 지분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됨⁹⁸⁾.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1) 납세의무자의 신고·정보 보고

- 역외중간회사 세제 및 가족재단 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 등은 각종 협력의무와 서류 제출의무를 부담함.
 - 납세자가 역외중간회사와의 사업관계를 언급하면서 사업관련 채무나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세기본법 §160에 의한 채권자 또는 수취인은 납세자가 납세자와 관련 회사, 개인, 파트너십 간에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관계를 공개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⁹⁹⁾.

96) 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p. GER/43

97) 국제조세법 §11(1)

98) 소득세법 §3(41)

99) 국제조세법 §16(1)

- 납세자는 조세기본법 §95에 따라 세무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어진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선서진술서를 제출해야 함¹⁰⁰⁾.
- 납세자는 역외중간회사와 주요 주주 간에 사업관계를 공개해야 하고, 소득합산과 세에 필요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 기록과 서류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음¹⁰¹⁾.

2) 금융정보 모니터링 제도¹⁰²⁾

- 유럽연합은 EU Saving Tax Directive(EUSTD)에 따라 자동정보교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이는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국가의 요청과 요청받은 국가의 승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국가 간에 자동적으로 조세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임.
 - 2003년에 도입된 EUSTD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EU 회원국 간에 이자지급과 관련된 자동정보교환이 이루어짐.
 - 27개의 EU 회원국 중 24개국¹⁰³⁾이 적어도 일 년에 한 번 이상 자동정보교환에 참여함.
 - 교환되는 정보의 최소 범위는 수익적 소유자의 신원과 거주지, 지급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수익적 소유자의 계좌번호, 이자소득금액, 채권의 양도대금, 상환대금, 환매대금과 관련된 정보임.

3) 정보교환협정 등

- 독일은 2010년 8월 현재 총 12개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100) 국제조세법 §16(2)

101) 국제조세법 §17(1)

102)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pp. 49~52

103) EU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가 끝날 때까지 EUSTD의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원천징수세 징수의무를 부담함.

Agreements; TIEAS)를 체결함.

- Jersey, Isle of Man, Guernsey, Bermuda, Gibraltar, Liechtenstein, Anguill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Bahamas, Cayman Islands, Turks and Caicos Islands, Saint Lucia

3. 호주

가. 개관

- 호주의 FIF 세제는 거주자인 투자자가 외국법인 등에 투자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조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1993년에 도입됨.
 - CFC 세제는 1990년에 외국법인의 과세소득이 유보되어 과세가 이연됨에 따라 조세가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됨.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1987년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도입됨.
- 역외투자펀드제도는 CFC 세제가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도입됨.
 - 즉, 호주 거주자 등에 의해서 지배(control)되지 않는 외국회사에서 누적된 소득(income)과 이득(gain)에 대해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제도임.
- FIF 세제는 CFC, 피지배외국신탁(CFT)의 소득 계산 시에도 적용되며, 외국생명보험상품(FLP) 중 투자소득 부문에도 적용가능 함.
 - 본 연구에서는 FIF의 일반적인 형태인 외국회사와 외국신탁을 중심으로 제도를 소개함.

나. 적용대상

- FIF 세제는 외국회사나 외국신탁의 지분을 보유한 호주의 거주자가 호주 조세를 이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됨.

1) FIF

- FIF 세제의 적용대상 펀드는 역외투자펀드임.
 - 역외투자펀드는 호주에서 설립되지 않는 외국회사(foreign company)나 외국신탁(foreign trust)¹⁰⁴⁾
 - 외국회사 : ITAA 1936 subsection 6(1)의 내국회사 정의에 따른 호주의 내국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외국신탁 :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
 - 호주의 신탁, 퇴직연금펀드 등이 아닌 신탁
 - 유언(will), 유언보충서(codicil), 또는 유언 없는 사망으로 인해 설립되지 않아야 함.
- 외국회사인 역외투자펀드의 지분(interest)은 적격지분을 제외한 지분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법적권리(legal document)를 포함함.
 - 적격지분을 제외한 지분 : 회사의 자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등을 의미.
 - 적격지분은 다음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지분임.
 - 주주가 호주의 금융기관(Australian financial institution, AFI)인 경우의 지분
 - 주주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중에 회사에 의해서 주주에게 발행되는 지분
 - 주주가 회사의 관계자(associate)가 아닌 경우의 지분
 - 지분에 대한 배당이 대출이자의 지급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의 지분¹⁰⁵⁾

104) §481(1) ITTA 1936

- FIF 상 지분(interest)은 다음을 의미함¹⁰⁶⁾.
 - 외국회사의 주식(share)
 - 외국신탁의 소득이나 자본금 상 지분(interest)

- 외국신탁인 역외투자펀드의 지분은 신탁의 자본이나 소득에 대한 지분과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 법적권리를 포함함¹⁰⁷⁾.

- 다음은 FIF 과세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임¹⁰⁸⁾, ¹⁰⁹⁾.
 -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납세자
 - 능동사업(active business)¹¹⁰⁾에 대한 지분의 보유
 - 능동사업은 적격활동(eligible activities)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함.
 - 적격활동은 ITAA 1936의 Schedule 4¹¹¹⁾에서 규정된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임¹¹²⁾.
 - 특정 외국회사 지분의 보유 : 다음의 외국회사 지분이 포함됨.
 - 외국은행(foreign bank) 지분, 외국은행의 외국지주회사 지분, 외국생명보험회사 지분, 외국생명보험회사의 외국지주회사 지분, 외국일반보험회사 지분, 외국일반보험회사의 외국지주회사 지분, 특정 부동산사업과 관련있는 외국회사 지분, 특정 부동산사업과 관련있는 외국회사의 외국지주회사 지분
 - AUD 50,000 이하의 지분 보유
 - 납세자와 특수관계자(associates)가 투자한 외국회사 등의 투자금액을 합산

105) §372 ITTA 1936

106) Foreign Investment funds guide 2008-09, ATO

107) §483(2) ITTA 1936

108)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07.

109) §429-527 ITTA 1936

110)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같이 노력(service)을 제공하여 발생시키는 소득

111) 은행업과 금융서비스의 제공, 금융중개서비스, 자본이익이 발생하는 주식, 채권 및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업, 생명보험업, 일반보험업, 건설을 제외한 부동산관련 활동

112) 적격활동 여부 확인방법: 상장 여부 검사법(stock exchanging method), 대차대조표법(balance sheet method)

- 일시적인 거주자가 보유하는 지분 보유
 - 과세연도 말 현재 일시적 거주자에 적용됨.
 - 일시적 거주자 : 임시비자 소유자, 사회보장법 1991 상 비거주자, 배우자가 사회보장법 1991 상 거주자가 아닌 경우의 거주자
- 외국퇴직연금펀드에 대한 지분 보유
- 거래주식(trading stock)의 일부인 FIF 지분 보유
 - FIF의 지분이 거주자의 거래주식(trading stock)의 일부를 구성하여 시장가치 평가를 선택하는 경우, FIF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특정 활동과 관련 있는 외국회사의 지분 보유
 - 특정활동에는 건설업, 부동산 개발업,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업 등.
- 특정 활동과 관련 있는 회사의 외국지주회사 지분 보유
- 특정한 FIF 비면제활동에 대한 투자금액
 - FIF가 면제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투자금액이 FIF에 대한 총투자금액의 10%가 초과하지 않는 경우 FIF가 면제되지 않는 활동에 대한 투자금액은 과세에서 제외됨.
- 미국에서 설립된 특정 FIF의 지분 보유

2)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자 : 외국회사와 외국신탁의 지분을 소유한 거주자¹¹³⁾
 - 거주자는 다음의 경우에 역외투자펀드를 소유함.
 - 첫째, 과세연도 중에 거주자이었어야 함.
 - 둘째, 과세연도 말 현재 역외투자펀드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 즉, 과세기간 중 거주자이었던 적이 있으며, 과세연도 말 현재 역외투자펀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역외투자펀드 지분을 보유한 것임.
 - CFC 과세제도(CFC measures)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와 양도신탁 과세제도 (transferor trust measures)를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는 FIF 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않음.

113) §529 ITTA 1936

3) 적용범위 상 CFC 제도와의 비교¹¹⁴⁾

-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CFC가 존재하여야 하며, 소득의 귀속자(attributable taxpayer)가 있어야 함.
 - CFC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¹¹⁵⁾.
 - 첫째, CFC는 회사(company)이어야 함.
 - 둘째, CFC는 외국회사이어야 함.
 - 셋째, 호주의 거주자가 외국회사를 지배(control)해야 함.
 - 소득의 귀속자 요건은 다음과 같음¹¹⁶⁾.
 - 10% 이상의 CFC 지분을 투자한 호주의 회사 등.
 - 다만, CFC가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에 의한 CFC일 경우에는 모든 지배 가능 group이 소득의 귀속자에 해당함.

- CFC에 대한 지배 여부 확인은 strict control test,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및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로 함.
 - Strict control test : 5개 이하의 호주의 법인 등이 외국회사 지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그 외국회사 지분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strict control test를 통과함.
 -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 1개의 호주의 법인 등이 외국회사 지분에 투자한 금액의 합계가 그 외국회사 지분의 40%를 초과하는 경우 o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를 통과함.
 -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 : 5개 이하의 호주의 법인 등이 실질적으로 그 외국 회사를 지배하는 경우 subjective de facto control test를 통과함.

- FIF 세제는 투자한 외국회사가 지배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하는 과세이연을 방지하는 제도로 적용범위에 있어서 CFC 세제와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음¹¹⁷⁾.

114)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07.

115) §340 ITTA 1936

116) §361(1) ITTA 1936

- 외국회사가 회사와 유사한 단위신탁(unit trust)이나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경우 CFC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FIF 세제는 적용됨.
- 외국회사가 호주의 거주자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CFC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에 FIF 세제는 적용됨.
- 외국회사가 CFC이나 특정한 호주의 주주가 10% 이상을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FIF 세제를 적용함.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

- FIF의 과세소득은 FIF 과세제도에서 인정한 계산방법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될 수 있음.
 - FIF의 과세소득 계산방법: 시장가치법(market value method), 의제수익률법(deemed rate of return method), 계산법(calculation method)¹¹⁸⁾

2) 과세소득 계산방법

- 과세기간 (notional accounting period) : 납세자의 과세기간과 일치함.
- FIF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은 시장가치법(market value method), 의제수익률법(deemed rate of return method), 계산법(calculation method)이 있음¹¹⁹⁾.

가) 시장가치법

- 시장가치법 : 과세기간 동안의 시가 변동을 고려하여 FIF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법¹²⁰⁾

117) Part X ITAA 1936

118) §535 ITTA 1936

119) §535 ITTA 1936

- 지분이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
- 다음의 2단계에 의해서 계산됨.
 - FIF 지분의 시가 변동 계산
 - FIF 이월결손금의 공제. 다만, 이월결손금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FIF 지분의 시가변동 계산

$\text{FIF 시가변동} = \text{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FIF 시가} + \text{과세연도 중에 수취한 배당금} - \text{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FIF 지분 시가} - \text{FIF 지분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

- FIF 시가변동 금액이 (-)일 경우 FIF 결손금 임.
- 환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에 적용되는 환율을 모든 계산항목에 적용함.

□ FIF 과세소득 = FIF 시가변동 - 이월결손금(unapplied previous FIF loss)

- FIF 지분의 취득과 처분 시점의 평가금액 : FIF 지분은 시장가치로 평가함.
 - FIF 지분의 취득과 처분 시점에 이를 평가함.
 - 취득과 처분시점에 대가없이 거래되는 경우나 공정가격에 의하여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가치로 평가함.

나) 의제수익률법

- 의제수익률법 : 지분(interest)의 시가에 법정이자율을 곱하여 FIF 소득을 결정하는 방법.
 - 지분은 취득원가에 복리로 계산된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계산됨.
 - 시장가치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 가능.

□ 의제수익률법에 의하여 FIF 소득을 계산하는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음.

120) §537-542 ITTA 1936

- 첫째, FIF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 보유한 FIF 지분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group으로 묶음¹²¹⁾.
 - 유형은 공통적 성질을 갖는 동일한 종류(class) 여부에 따라 분류함¹²²⁾.
- 둘째, FIF 과세기간 개시시점의 기초가액을 결정함.
 - 과세기간 중 취득한 FIF지분 : 매입가액 + 매입부대비용
 - 전기 이전에 취득한 FIF 지분 (전기에 의제수익률법 적용) : 직전 과세기간 기초의 FIF 지분가액 + 직전 과세기간의 FIF 소득 - 직전 과세기간 중 FIF가 지급한 분배금(distribution)
 - 전기 이전에 취득한 FIF 지분 (전기에 시장가치법 적용) :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FIF 지분 평가액
 - 전기 이전에 취득한 FIF 지분 (전기에 계산법 적용) : FIF 지분이 상장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 말 현재 시장가치로 평가하며, FIF 지분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초 취득시점의 취득가액에 복리로 계산한 경과 기간 법정이자를 합산하여 평가함.
- 셋째, FIF 소득을 다음과 같이 계산함.

$$\text{FIF 과세소득} = (\text{기초가액} \times \text{의제수익률}) \times \frac{\text{보유기간일 수}}{365}$$

- 넷째, 의제수익률을 계산함 : 의제수익률 = 기초이자율 + 4%
 - 기초이자율 : 90일 만기 은행채의 월평균수익률
 - 90일 만기 은행채의 월평균수익률은 호주준비은행(the Reserve Bank of Australia)에서 매 분기 발표함.
- 마지막으로, FIF 소득을 호주달러로 환산함.
 - 환산환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임.

121) §544 ITTA 1936

122) Foreign Investment funds guide 2008-09, ATO

다) 계산법

- 계산법 : 과세기간 동안 FIF의 세무상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방법
 - 시장가치법, 의제수익률법을 적용하는 납세자는 계산법을 적용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
 - 계산법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서만 적용됨.

- 계산법에 의하여 FIF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계산법의 사용을 선택하여야 함¹²³⁾.
 - 둘째, FIF의 세무상 손익(calculated profit and loss)을 계산함.
 - FIF의 추정수입(notional income)을 계산
 - FIF의 추정경비(notional deduction)를 계산한 후, 계산 수익에서 차감하여 추정 순이익을 계산
 - FIF 지분율을 결정
 - FIF 지분율에 따라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세무상 순이익(calculated profit)을 계산

$\text{납세자에게 귀속된 FIF 과세소득} = \text{세무상 순이익} \times \text{귀속 지분율}$

- 계산법을 사용하는 투자자 중 CFC 과세제도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을 선택한 자는 CFC 과세제도를 준용하여 귀속되는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음¹²⁴⁾.
 - 이 경우 투자자는 FIF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CFC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CFC 과세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함.

123) §535 ITTA 1936

124) §559A ITTA 1936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배당시 과세소득 제외

- FIF 과세제도는 과세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배제하기 위하여, 다음의 경우 FIF에서 배분받는 금액은 FIF 과세소득에서 공제함.
 - 배분받는 금액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으로 납세자의 과세소득에 이미 포함된 경우
 - FIF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직전 연도 과세소득에 포함된 경우
 - 과세대상(non-exempt)에 포함된 비-포트폴리오(non-portfolio) 투자로 인한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non-assessable) 배당금이 호주의 내국회사에서 지급된 경우 : 비-포트폴리오 배당(non-portfolio dividend)
 - 즉, 외국회사가 호주 내국법인에게 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원천으로 지급한 비-포트폴리오 배당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됨¹²⁵⁾.
 - 비-포트폴리오 배당 : 어떤 회사가 최소 10% 이상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 회사에 지급한 배당¹²⁶⁾
 - CFC의 면제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

2) 외국납부세액공제

- FIF 제도에 의해서 과세된 소득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외국에 지급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음¹²⁷⁾.

125) §23AJ ITTA 1936

126) §317 ITTA 1936

127)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07.

3) 양도차익 계산

- FIF의 지분을 처분 시점에서 FIF 제도에 의해서 과세되어야 할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처분대가는 FIF 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함¹²⁸⁾.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1) FIF 투자금액 신고

- 납세자는 개인소득세(ITR) 신고 시 다음의 사항을 'Tax return for individual (supplement section)'의 19번, 20번 항목에 신고하여야 함.
 - FIF 투자지분의 소유 여부
 - FIF 투자지분 소유한 경우, FIF 소득금액
 - 국외원천소득금액
 - 해외자산 소유 여부
 - 해외자산은 AUD5,000 이상만 해당됨.
- 또한 역외계좌와 관련하여 보유금액과 상관없이 계좌번호와 계좌명, 계좌가 설정된 기관명과 주소, 동 계좌에서 이자소득을 수취하는지 여부를 확장 세금 신고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¹²⁹⁾.

2) 조세정보교환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 조세정보협정이 체결된 경우,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FIF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음.

128) §613 ITTA 1936

129)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은 호주와 비-OECD 국가인 상대국 간에 세무행정과 세법실행(enforcement of tax law)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만드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임¹³⁰⁾.
 -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과세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포괄적 조세조약과는 다름.
 -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 규정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음.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은 과세당국의 책임자가 담당하는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제조세조약보다 더 광범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함.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은 일정 시점에 특정한 조사와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조세조약보다 더 구체적임.

- 호주와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음.
 - Angullia, Antigua and Barbuda, Aruba, Bahamas, Belize,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Dominica, Gibralta, Grenada, Guernsey, Isle of Man, Jersey, Marshall Islands, Monaco, Netherlands Antilles, Samoa, San Marino, St. Kitts & Nevis, St. Lucia,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urks and Caicos Islands, Vanuatu.

3) 조세협약상 정보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규정

-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상 정보교환 조항을 적용하여 FIF 관련 조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과 호주 간 조세협약의 경우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한호 조세협약 제26조

130) 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ATO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 협약의 제규정을 또는 국내법에 의한 과세가 이 협약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에 있어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아니한다. 일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접수된 정보는 동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입수된 정보와 마찬가지로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의 부과나 징수, 동 조세에 관한 집행이나 소추 또는 동 조세에 관련된 소원의 결정에 관계되는 인 또는 당국(협월과 행정기관을 포함함)에게만 공개되며 또한 그와 같은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4)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JITSIC) 참여¹³¹⁾

- 2004년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이 참여하여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JITSIC)를 결성함.
 - JITSIC는 국제거래 남용에 대한 실시간의 정보공유를 함.
 - 2007년 5월 일본이 JITSIC의 다섯번째 Member가 됨.
 - JITSIC는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계좌를 폐쇄하거나 부적절한 외국납부세액공제나 손실이 예상한 선택적 거래 등에 제재를 가하였음.

4. 뉴질랜드

가. 개관

- 뉴질랜드는 역외포트폴리오 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987년에 FIF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
 - 뉴질랜드는 1985년에 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한 후, 역외투자한 이후 이에 대한 배당금의 회수를 이연(deferral)시키는 방법으로 뉴질랜드 조세에 대한 회피가 증가하였음.

131)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직접투자(지분율 10% 이상 투자)와 포트폴리오 투자(지분율 10% 미만 투자)에 대하여 각각 CFC 과세제도와 FIF 과세제도를 도입하였음.
 - CFC는 지배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법인 등은 FIF로 보아 FIF 과세제도를 적용하여 역외투자를 통한 조세회피방지제도를 보완함.

- 2001년에 역외포트폴리오 투자 과세제도가 조세개혁 제안에 포함되어 2007년부터 새로운 FIF 과세제도가 실행되고 있음.
 - 2007년 이전의 FIF 과세제도는 유사한 국내투자 등과 비교할 때 과세부담에 있어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정함.
 - 이러한 불리한 측면은 다음과 같음¹³²⁾.
 - 첫째, 이전 FIF 과세제도에 따르면 아시아나 이머징마켓에 대한 투자는 성숙된(matured) 경제에 대한 투자보다 불리하게 됨.
 - 둘째, FIF는 도관(conduit) 규정이 없으므로 도관 규정을 적용받는 국가에서 설립된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뉴질랜드의 펀드산업보다 영국이나 호주의 펀드산업에 더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함.

- 2007년에는 뉴질랜드 펀드(managed fund)산업의 불리한 점을 많이 개선하였으며, 그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단위신탁, 퇴직연금펀드 등 모든 간접 투자기구를 포트폴리오 투자기구(PIE)로 볼 수 있음.
 - 둘째, 뉴질랜드 투자기구(investment entity)와 특정한 호주 투자기구에 대한 지분의 양도는 과세에서 면제됨.
 - 셋째, PIE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PIE 과세소득은 투자자의 한계세율로 과세됨.
 - 펀드로 인한 소득은 33%의 세율로 과세됨.

132)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7. 6.

- 이에 반해 투자자 개인소득세의 한계세율은 19.5% ~ 39%임.
- 넷째, 최고세율(39%)로 과세되는 PIE 투자자는 펀드로 인한 소득의 세율인 33%를 적용받음.

나. 적용대상

1) FIF 지분

- FIF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FIF 지분은 다음과 같음¹³³⁾.
 - 직접적인 외국회사, 외국단위신탁 소득(income) 상 지분(interest)
 - 외국 퇴직연금펀드로부터 급여(benefit)를 얻을 수 있는 권리
 - 외국 생명보험회사로부터 급여(benefit)를 얻을 수 있는 권리

- FIF 과세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FIF 지분은 다음과 같음¹³⁴⁾.
 - 10%의 지분율을 초과하는 CFC 지분
 -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취득원가 NZD50,000 미만의 지분¹³⁵⁾
 - 취득원가액은 과세기간 전체의 기간 동안 NZD50,000에 미달하여야 함.
 - 투자한 국가나 지역의 외환통제로 인하여 뉴질랜드 화폐로 교환될 수 없거나 처분이 제한된 지분¹³⁶⁾
 - FIF 지분에 관하여 뉴질랜드의 거주자가 된 이후 최초 4년 동안의 이민자¹³⁷⁾
 - 뉴질랜드 거주자가 되기 이전 이민자가 취득한 퇴직연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¹³⁸⁾
 - 호주에서 설립된 회사 중 호주의 증권거래소(ASX)의 승인된 지수¹³⁹⁾에 포함된 회

133) <http://www.ird.govt.nz/toii/fif/>

134)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7. 6.

135) §EX33 ITA

136) §EX34 ITA

137) §EX35 ITA

138) §EX36 ITA

139) 예를 들면, All Ordinary Index(호주의 500대 대규모 상장사 기준 지수)

사에 대한 지분¹⁴⁰⁾

- 호주에서 설립된 특정한 단위신탁에 대한 투자지분¹⁴¹⁾ 등
 - 특정한 단위신탁은 최소 투자회전율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함.

2) 적용대상자

- FIF 과세제도를 적용받는 적용대상자는 다음의 역외투자(offshore investment) 지분을 보유한 뉴질랜드 거주자임.
 - 지분을 10% 미만의 외국회사(foreign company) 지분
 - 지분을 10% 미만의 외국단위신탁(foreign unit trust) 지분
 - FIF가 뉴질랜드에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보험회사인 경우, 생명보험상품의 지분
 - 외국 퇴직연금펀드의 지분

3) 적용범위상 CFC 제도와의 비교

-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CFC요건과 적용대상자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함.
- CFC요건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CFC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CFC 임¹⁴²⁾.
 - ① CFC는 회사(company)이어야 함.
 - 회사는 그 구성원과 법률적으로 분리된 실체임.
 - ② CFC는 외국에서 설립(resident)되어야 함.
 - 즉, 뉴질랜드에서 설립되어서는 안 되며, 이중과세방지협약에 의해서 거주자로

140) §EX33C ITA

141) §EX33D ITA

142) <http://www.ird.govt.nz/toii/cfc/what-cfc.html>

처리되어서도 안 됨.

- 뉴질랜드에서 설립(incorporate)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i) 주사무소가 뉴질랜드에 있고, ii) 관리업무가 뉴질랜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iii) 이사가 뉴질랜드에서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임.

③ CFC는 뉴질랜드 거주자에 의해서 지배되어야 함.

-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i) 5인 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의 지배지분이 합산하여 50%를 초과하는 경우나, ii) 한 뉴질랜드 거주자가 40%를 초과하는 지분지분을 보유하면서 어떤 비거주자도 이를 초과하는 지분율이 없는 경우나, iii) 5인 이하의 뉴질랜드 거주자가 주주의 의사결정권 행사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함.
- 지배지분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주주의 의사결정 권한, 회사로부터 소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회사의 순자산으로부터 분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함.

□ 적용대상자 : CFC 과세제도는 뉴질랜드 거주자와 그의 특수관계자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외국회사의 소득 지분율(income interest)이 10% 이상인 뉴질랜드 거주자에 대해서 적용됨¹⁴³⁾.

□ 따라서 적용범위에 있어서 FIF와 CFC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 첫째, FIF는 CFC와는 달리 외국회사에 대한 지배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지배되지 않는 외국회사의 뉴질랜드 투자자는 합산한 지배지분이 많더라도 FIF를 적용하여야 함.
- 둘째, FIF는 CFC와 달리 외국회사의 실체가 법인으로 특정되지 않음.
 - 따라서 외국회사뿐만 아니라 외국의 생명보험상품에도 FIF가 적용될 수 있음.
- 셋째, CFC 적용대상자는 개별적으로 10%가 넘는 지배지분을 보유하여야 하는 데 반해, FIF 적용대상자는 10%를 초과하는 지분율을 보유하여서는 안 됨.

143) <http://www.ird.govt.nz/toii/fif/>

다. 과세소득

1) 과세소득 범위

- FIF의 과세소득은 FIF에 귀속되는 소득(attributing interest)임¹⁴⁴⁾.
 - FIF 귀속소득은 회계이익법 등 6가지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에 의해서 계산된 소득(attributing interest)을 의미함.
 - FIF에 귀속되는 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함.

2) 계산방법

- FIF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회계이익법(accounting profit method) 등 6가지 방법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음
 - 과세소득 계산방법 : ① 회계이익법(accounting profit method), ② 지점간주법(branch equivalent method), ③ 비교가치법(comparative value method), ④ 의제수익률법(deemed rate of return method), ⑤ 공정배당수익률법(fair dividend rate method), ⑥ 원가법(cost method)
 - 계산방법은 개별방법에서 요구되는 요건에 따라 적용되어야 함
- 계산방법은 기본적으로 개별방법의 적용요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함.
 - 다만, 특정한 적용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¹⁴⁵⁾.
 - ① 회계이익법 : 회계이익법이 금지되지 않고 실행 가능할 경우
 - ② 비교가격법 : 실행 가능할 경우
 - ③ 의제수익률법
 - 여러 FIF 지분의 과세소득은 각기 다른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하나의 FIF

144) <http://www.ird.govt.nz/toii/fif/>

145) §EX48 ITA

지분 안에서는 동일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 계산방법이 채택된 후에는 이후의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¹⁴⁶⁾.
 - 다만, 비교가치법, 회계이익법, 또는 지점간주법이 실행가능(practicable)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변경하여야 함.
 - 의제수익률법은 적용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되어야 함.

가) 회계이익법

- 회계이익법은 회계연도 동안의 FIF 세후 회계순이익을 기준으로 납세자에게 귀속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임.

- 회계이익법을 적용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음¹⁴⁷⁾.
 - FIF는 주식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어야 함
 - FIF의 세후 회계순이익은 FIF가 설립된 국가의 GAAP에 따라 계산되어야 함
 - 세후 회계순이익이 주주에게 공개되는 재무제표에 표시되어야 함
 - 세후 회계순이익은 FIF가 자회사를 가지는 경우에는 연결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 세후 회계순이익은 특별손익 항목(extraordinary items)이 포함되어야 함
 - FIF 지분을 소유한 투자자는 세후 회계순이익이 회계기간 동안의 FIF의 세후 순이익을 공정하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믿어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야 함
 - FIF는 회계이익법을 사용할 수 없는 특정한 회사 등(Sch. 25, Part C, ITA)에 포함되지 않아야 함
 - 현재는 이에 해당되는 회사는 특정되지 않음

- 회계이익법에 의한 귀속 과세소득(attributing income)은 세후 회계순이익에서 납세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

146) §EX62 ITA

147) Global taxation and Investment— New Zealand, IBFD, 2010.

$$\text{과세소득} = \text{FIF의 세후 회계순이익}^1) \times \text{납세자의 FIF 지분율}^2)$$

- 주: 1) FIF 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임.
2) FIF가 CFC인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함.

- FIF 지분을 12개월 이상 보유하는 경우, 기말에 보유한 지분을 과세기간 동안 보유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음¹⁴⁸⁾.
- 회계순이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시가변동을 기준으로 하는 비교가치법보다는 변동성이 크지 않음.

나) 지점간주법

- 지점간주법은 FIF를 지점으로 간주하여 지점에 관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계산하는 방법임.
 - FIF가 회사이고, FIF 지분을 보유한 자가 국세청장에게 지점간주법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 적용 가능함.
 - 실무적으로는 뉴질랜드 거주자인 다른 주주가 CFC 규정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함.
- 지점간주법에 의한 귀속 과세소득(attributing income)은 CFC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간주지점소득에서 납세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함¹⁴⁹⁾.

$$\text{과세소득} = \text{FIF의 간주지점소득}^1) \times \text{납세자의 FIF 지분율}^1)$$

- 주: 1) FIF가 CFC인 것으로 보아 지분율을 계산함.

다) 비교가치법

- 비교가치법은 FIF 지분의 종료일 현재의 가치와 개시일 현재의 가치 간의 차이를 귀속 과세소득으로 계산함¹⁵⁰⁾.

148) §EX49(9) ITA

149) §EX50 ITA

150) §EX55(3) ITA

$$\text{과세소득} = (\text{종료일가치} + \text{기중 처분이익}) - (\text{개시일가치} + \text{신규 취득원가})$$

- 미실현이익도 과세되는 방법으로 변동성이 큼.
-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라) 의제수익률법

- 의제수익률법은 FIF 지분의 당기초 개시(開始) 장부가액에 의제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에 의해서 과세소득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

$$\text{과세소득} = \text{개시(開始) 장부가액} \times \text{의제수익률}$$

- 의제수익률은 협의회(council)에서 행정명령(order)에 의하여 설정됨.
- 의제수익률은 5년 만기 국채수익률에 4%의 margin을 가산하여 설정됨.
 - 2008/2009 과세연도의 의제수익률은 9.18%임.
- FIF의 성과와 무관하게 추정된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 따라서 의제수익률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실제수익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

마) 공정배당률법

- 공정배당률법은 지분의 개시 장부가액에 공정배당률을 곱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임¹⁵¹⁾.

$$\text{과세소득} = \text{개시(開始) 장부가액} \times \text{공정배당률}$$

- FIF가 회색기업(grey list company)이 아니고, FIF에 직접투자한 투자자의 지분율이 과세연도 기초 기준으로 10% 이상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임.
- 공정배당률은 주주의 분류에 따라 다름.

151) Global taxation and Investment - New Zealand, IBFD, 2010.

- 주주가 개인인 경우 : 과세기간 중 지분의 가치(value)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공정배당률은 5%를 적용하나 지분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소득은 없음.
- 주주가 개인이 아닌 경우 : 과세기간 중 지분가치 상승·하락과 관계없이 공정배당률은 5%를 적용함.
- 당기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지분에 대한 귀속 과세소득은 무시됨.
-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됨.

바) 원가법

- 원가법은 과세기간 중 지분을 처분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을 추정하여 귀속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임¹⁵²⁾.

$$\text{과세소득} = \text{개시(開始) 장부가액} \times 0.05 + \text{처분 조정}$$

- 시가정보를 얻을 수 없고, 공정배당률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임¹⁵³⁾.
- 개시 장부가액은 지분의 보유에 따라 달리 평가됨.
 - 당기 중 지분보유에 변동이 없을 경우 : 개시 장부가액 = $1.05 \times \text{직전기의 개시 장부가액}$
 - 당기 중 지분보유가 증가할 경우 : 개시 장부가액 = $1.05 \times \text{직전기의 개시 장부가액} + \text{증가된 지분} \times \text{평균원가}$
 - 당기 중 지분보유가 감소할 경우 : 개시 장부가액 = $(\text{개시 지분수} / \text{직전기의 개시 지분수}) \times 1.05 \times \text{직전기의 개시 장부가액}$
- 처분조정(quick sales) : $0.005 \times \text{보유지분증감} \times \text{평균원가}$
 - 보유지분증감(peak holding differential) : (a) 당기의 개시 지분보유수와 최고 지분보유수 간의 차이와 (b) 당기의 최고 지분보유수와 당기 말 지분보유수 간의

152) §EX56(1) ITA

153)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7. 6.

차이 중 더 작은 금액; 즉, $\text{Min}(a,b)$.

-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됨.

3) 외화 귀속 과세소득 환산방법

- 귀속 과세소득은 외화로 계산된 후 다음의 환율로 의해 뉴질랜드 달러로 환산됨¹⁵⁴⁾.
 - 시가 평가일의 현물환율 (spot rate) : FIF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 평균환율(과세연도 중 매월 15일 현물환율에 대한 평균환율임): FIF 지분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 다만, 지점간주법은 CFC 과세제도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함.

라. 이중과세 방지장치

1) 배당시 기과세소득 제외

-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는 FIF 귀속 과세소득으로 이미 과세한 것이므로 투자자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 공정배당률법, 원가법을 제외한 나머지 계산방법도 기과세된 귀속 과세소득을 원천으로 한 배당금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2) 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법인이 지급한 배당에 대하여 외국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은 투자자의 귀속 과세소득 계산 시 세액공제에 포함시킴.
 - 비교가치법, 공정배당률법, 원가법 등에 의할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154)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7. 6.

마. 투자정보 파악수단

1) 소득세 신고

- FIF 지분을 보유한 거주자는 소득세 신고 시에 FIF 지분의 소유 여부와 성질(nature)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함.

2) 국제청장의 FIF 정보 요청 권한

- 국제청장은 조세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 1994) 제61조에 따라 FIF 지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¹⁵⁵⁾.
 - 불특정자(any person)가 FIF 상 소득지분(income interest)이나 지배지분(control interest)을 소유한 경우, 또는 FIF의 귀속되는 소득을 소유한 경우, 그 불특정자는 국제청장에게 FIF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국제청장에게 공개할 정보는 ① FIF 지분의 소유와 성질(nature)에 관한 정보와, ② 기타 소득세법(ITA 2007)의 적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됨¹⁵⁶⁾.

3) 조세협약상 정보교환 (Exchange of Information) 규정

-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조항을 적용하여 FIF 관련 조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은 제26조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
 -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조세협약 제25조

155) §61 TAA

156) §61(1) TAA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하의 과세가 본 협약에 배치되지 않는 한에 있어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에 관한 본 협약 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의 제 규정을 시행하고 또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다. 이와 같은 정보의 교환은 제1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일방체약국이 수령한 모든 정보는 동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하에 획득된 정보와 동일하게 비밀로 취급되어야 하며 본 협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 및 강제집행 또는 소송이나 소원의 결정에 관련된 인 또는 당국(법원이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공개된다. 이와 같은 인이나 당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들은 그 정보를 공개법정변론이나 재판관의 결정에 있어 공개할 수 있다.

4) 조세정보교환 협정(Tax information exchange agreements)

- 조세정보협정이 체결된 경우, 조세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대해서 FIF에 관한 조세정보를 요청하여 확보할 수 있음.
 -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은 뉴질랜드와 비-OECD 국가인 상대국 간에 세무행정과 세법실행(enforcement of tax law)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만드는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협정임.
 -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과세권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포괄적 조세조약과는 다름.

- 뉴질랜드와 조세정보교환협정(TIEA)을 체결 중인 국가는 다음과 같음¹⁵⁷⁾.
 - Anguilla, Bahamas, Bermuda, British Virgin Islands, Cayman Islands, Cook Islands, Dominica, Gibraltar, Guernsey, Isle of Man, Jersey, Netherlands Antilles, St Christopher and Nevis,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urks and Caicos Islands.

157) <http://taxpolicy.ird.govt.nz/tax-treaties#tiea>

IV.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관한 분석 및 시사점

1.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과세기법

가. 역외투자펀드 적용요건

-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가 주목하는 대상은 원칙적으로 CFC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즉 지배권 없는 외국실체(Foreign Entity) 중 수동소득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해당됨.
- PFIC나 FIF 세제는 지배권(Control)요건이나 내국인 주주의 최소보유비율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
 - 미국, 호주, 캐나다의 CFC 과세제도에서 지배권은 통상적으로 50%의 지분율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내국인 주주의 최소보유비율은 10% 수준임.
 - 독일도 지배권은 50% 지분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국인 주주의 최소보유비율은 필요로 하지 않음.
 - 지배권 판단의 기준이 되는 지분은 회사의 자본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보통주, 우선주 등이 해당됨.
 - 또한 실질적으로 지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도 포함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 지배권에는 투자자나 투자자의 특수관계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함.
- PFIC나 FIF 제도는 외국실체(Foreign Entity)의 설립 형태가 회사에 한정되지 않고 광

범위함.

- 미국과 독일의 PFIC 세제는 회사를 대상으로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의 FIF 세제는 외국에서 설립된 모든 회사, 신탁, 파트너십 등을 역외투자펀드로 봄.
 - 다만, 미국의 PFIC 세제는 내국인이 '도관의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면 PFIC 세제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신탁이나 파트너십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며, 독일은 역외중간회사 세제와 별도로 가족재단 세제를 운영함.
- 따라서 CFC 과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실체도 PFIC 또는 FIF 과세제도 적용대상이 됨.

□ PFIC나 FIF 세제는 수동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이지만, 포트폴리오투자의 경우 수동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함.

- 미국과 호주는 PFIC 또는 FIF 요건을 통해 수동소득이 적거나 발생하지 않는 실체에 대해 PFIC 또는 FIF 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임.
- 독일은 역외중간회사의 수동소득만을 구분하여 과세함.

나. 과세소득 계산방법

□ PFIC나 FIF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은 CFC 세제의 지점간주방식(Branch-equivalent Method) 이외에 보충적 계산방식을 채택함.

- 미국의 가산금과세법은 PFIC의 지분에 대한 실제 배당이나 처분이 있을 때, 과세이연 기간 동안의 귀속되는 이자혜택에 대해 과세함¹⁵⁸⁾.
- 호주의 시장가치법, 의제수익률법과 뉴질랜드의 회계이익법은 실제 배당이나 처분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과세기간별로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방식임¹⁵⁹⁾.

158) 과세가 이연된 세액의 현재가치와 장래가치의 차이를 이자로 파악한 후 이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화폐의 시간적 가치에 따른 접근법'이라 함.(한원교, 「외국투자펀드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외국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p. 86)

159) 일정 과세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을 본래 귀속되어야 할 과세연도의 과세소득에 즉시 산입하는

- PFIC나 FIF의 과세소득 계산방법에 있어 개별 국가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과세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됨.
 - 특히, 지배력을 갖지 않는 PFIC나 FIF에 대해 내국인 주주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추계에 의한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을 사용하기도 함.
 - 하지만 추계에 의한 과세소득 계산방법은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는다면 조세법상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추계에 의한 과세소득은 실제로 미확정된 소득이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다만, 미국의 가산금과세법은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추계과세로 인한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다. 이중과세 조정방법

- PFIC 또는 FIF 과세제도에 따라 배당 전에 먼저 인식된 과세소득 중 일부가 실제 배당으로 인해 회수가 될 경우 실제 배당금은 과세소득의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함.
- 또한, 실제 배당으로 인해 외국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될 필요가 있음.
 -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범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배권을 획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경향이 있음.

방법으로 '포괄적 소득개념에 따른 접근법' 또는 '소득즉시산입법'이라 함.(한원교, 앞의 논문, p. 86)

2.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관한 세무행정

가. 과세정보 신고

-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세무신고시 납세자는 역외투자펀드에 관한 사항과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에 의한 과세소득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개별 국가별로 투자사항에 관한 신고양식이 있으며, 과세소득 계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역외투자펀드 과세소득의 신고 이외에도 역외투자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세무 신고제도를 운영함.
 - 미국은 역외계좌신고제도와 이에 대한 검증수단인 외국은행에 대한 QI (Qualified Intermediary) 제도를 통해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함.
 - 호주는 고액자산가의 해외투자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해외투자자산의 소유여부, 국외원천소득 금액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역외계좌의 경우 역외탈세방지를 위하여 계좌번호와 계좌명 등을 자세히 신고하여야 함.

나. 조세정보 교류

- 역외투자펀드를 비롯한 해외자산에 대한 세원관리를 위하여, 각국의 조세당국은 조세정보교환협약,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음.
 - 조세정보교환협약은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을 체결되지 않는 조세피난처(Tax Heaven)와 체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조약보다는 광범위한 정보교환을 규정함.
 - 또한 조세조약 체결국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상 정보교환 규정을 두어 세무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음.

- 국외 금융소득 정보에 대한 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가 참여하는 Joint International Tax Shelter Information Centre (JITSIC)를 결성함.
-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해외자산정보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조세행정법을 개정하여 국세청장이 FIF 지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국세청장이 FIF 지분에 대한 미신고 혐의를 포착할 경우에 직접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제도임.

3.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필요성과 한계

가.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필요성

- 금융세계화의 영향으로 해외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최근의 경우 해외포트폴리오투자¹⁶⁰⁾가 해외직접투자¹⁶¹⁾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거주자의 과세소득은 국내·해외원천소득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회피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해외지분투자의 경우, 해외회사가 지급하는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해외회사가 배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없음.
-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국들은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도입하였음.
 - OECD 회원국의 상당수 국가¹⁶²⁾는 이익유보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160) 해외포트폴리오투자는 외국에서 발행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161) 해외직접투자는 외국의 사업(business)에 대한 투자를 의미함.

CFC 과세제도를 도입함.

- 또한 일부 국가는 CFC 과세제도상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PFIC 또는 FIF 과세제도를 도입하기도 함.

□ CFC 과세제도는 그 운영에 있어 지배권의 평가와 적용대상의 결정에 관한 문제점을 발생시켰음.

- 첫째, CFC 과세제도의 대상은 외국회사의 지배권을 소유하는 경우이지만, 지배권 없이도 조세회피 의도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투자자의 입장에서 조세상 이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이용하려는 요구가 있으므로 피투자실체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지배권 없이 조세회피 목적의 잔여이익 유보를 할 수 있음.
 - 따라서 최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지배권의 확보가 어렵지만 투자자의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둘째, CFC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은 법적인 실체가 회사의 형태인 경우에만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적용대상을 특정외국법인으로 한정하여 법인형태가 아닌 파트너십, 신탁 등의 실체에 대해서는 CFC 과세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다양한 금융상품과 경제실체가 발달하는 경제환경에서는 CFC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할 경우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커질 수도 있음.

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의 한계

□ OECD는 역외포트폴리오 투자 과세제도에 관한 보고서인 ‘Taxation of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에서 PFIC 또는 FIF 과세제도가 없는 국가에 대해서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음.

162)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 하지만 실제로 PFIC 또는 FIF 과세제도를 도입한 국가의 수는 많지 않음.
- 이는 PFIC 또는 FIF 과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사항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임.

1) 유보된 수동소득의 인식 문제

- PFIC 또는 FIF 과세제도는 배분되지 않은 수동소득을 인식하는 회사나 펀드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실제 이러한 회사나 펀드만을 목표로 하기 어려움¹⁶³⁾.
- 개별 국가마다 저율과세 후 유보된 수동소득에 대한 조세상 취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유보된 수동소득을 보유한 PFIC 또는 FIF를 발견하는 것이 어려움.

2) 자본이득 과세방법과의 부조화

- 유보된 수동소득은 잔여이익으로 주식의 가치에 반영될 것이므로 PFIC 또는 FIF 과세제도는 자본이득 과세제도와 조화되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자본이득 과세제도와 배당소득 과세제도는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움¹⁶⁴⁾.
- 즉, 자본이득의 조세부담이 배당소득의 조세부담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PFIC 또는 FIF 과세제도에 의해서 인식한 소득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3) 과세정보 확보의 어려움

- OECD는 PFIC 또는 FIF 과세제도의 성공요건으로 납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적절한 기반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함¹⁶⁵⁾.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외투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은 많은 비용의 투입과 절차적 문제가 수반됨.

163) Vann, "Trends in company shareholder taxation: single or double taxation," IFA Cahiers 2003, IFA, 2003.

164) Vann, 앞의 글, 2003.

165) OECD, "Taxation of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Mutual Funds and Possible Tax Distortions," OECD, 1999.

- 국가간의 효과적인 금융정보의 상호교환이 선결되어야 함.

4) 조세법의 일반원칙과의 충돌가능성

-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하여 조세법상 일반원칙과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과세소득을 추계로 계산해야 함.
 - 또한, 과세소득의 결정을 위한 정보의 부족으로 미실현소득을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수도 있음.

참고문헌

- 김인근, 『국제조세의 이론과 실무』, 광교이텍스, 2010.
- 김준석·한인철, 『국제조세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0.
- 최경수·최용환, 「조세피난처 세계적용의 국제적 과세동향과 그 시사점」, 『조세학술논
집』 제24집 제1호, 한국국제조세협회, 2008.
- 한원교, 「외국투자펀드의 유보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외국입법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홍범교·구자은·마정화, 『역외탈세방지를 위한 조세행정상 역외금융정보 확보제도 연
구』, 한국조세연구원, 2010.
- Ernest R. Larkins, *International Applications of U.S. Income Tax Law: Inbound and
Outbound Transactions*, John Wiley & Sons, 2004.
- Charles H. Gustafson, Robert J. Peroni and Richard Crawford Pugh, *Tax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 Materials, Text and Problems*, West Group, 2006.
- Dennis Campbell, *International Taxation of Low-Tax Transactions: High Tax Jurisdictions*,
Yorkhill Law Publishing, 2009.
- Lee Burns, “Rethinking the Design of Australia's CFC Rules in the Global Economy,” *IBFD
Bulletin*, 2005. 7.
- OECD, *Taxation of Cross-border Portfolio Investment: Mutual Funds and Possible Tax
Distortions*, OECD, 1999.
-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OECD, 1998.
- Renata Fontana, “The Uncertain Future of CFC Regimes in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Part 1,” *IBFD European Taxation*, June 2006.
- Reuven S. Avi-Yonah, “The Silver Lining: The International Tax Provisions of the

American Jobs Creation Act-A Reconsideration,” IBFD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January 2005.

Richard J. Vann, “Trends in Company Shareholder Taxation: Single or Double Taxation,” IFA Cahiers 2003, IFA, 2003.

Shawn M. Brade, Ann Kippen and Firoz K. Talakshi, *Controlled Foreign Company Taxation Regimes in Selected Countries*, Advisory Panel on Canada's System of International Taxation, April 2008.

Smith & Dunbar, “Taxation of Offshore Portfolio Investment by New Zealand Residents: New Foreign Investment Fund Rules,” *Bulletin for International Taxation*, IBFD, 2007. 6.

Ulrich-Peter Kinzl, “Conflicts in the Attribution of Income to a Person,” *IFA Cahiers* Volume 92B, IFA, 2007.

<http://online2.ibfd.org/>

<http://oecd.int/olis/>

<http://www.ato.gov.au/>

<http://www.ird.govt.nz/>

<http://www.bundesfinanzministerium.de>

세법연구 10-04

주요국의 역외투자펀드 과세제도 조사연구
-CFC 세제를 보완하기 위한 FIF 세제를 중심으로-

2010년 8월 23일 인쇄

2010년 8월 30일 발행

저 자 홍범교 · 김태훈 · 마정화

발행인 원 윤 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TEL: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문화사

© 한국조세연구원 2010

ISBN 978-89-8191-513-1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